

# 대한제국의 皇帝政과 「民國」 정치이념

—國旗의 제작·보급을 중심으로—

李 泰 鎮

1. 머리말
2. 國旗 창안에 관한 여러 설의 검토
  - 1) 李滄遠 제안설
  - 2) 日本公使 하나부사(花房義質) 제안설
  - 3) 高宗 창안설
  - 4) 馬建忠 창안설
  - 5) 李應浚 창안설
3. 국기 제정과 奎章閣 소장의 「御旗」
4. 「御旗」의 太極八卦圖의 유래와 民國 정치 이념
5. 高宗時代의 民國 이념과 국기의 標章
6. 대한제국의 國旗 및 君主旗 선양
7. 맺음말

## 1. 머리말

개항으로 서양 정치사상 및 제도에 관한 정보가 입수된 후 조선왕조의 유교 정치사상 및 왕정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는 근대화 과정에 대한 고찰의 핵심적 주제의 하나이다. 친정에 나선 高宗은 서양문명 수용의 결단 아래 일본, 중국에 정보 및 기술 수집 사절단을 보내는 등 開明君主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1882년 4월의 朝美修好通商條約의 조인은 신문물 수용의 자세를 확고히 보인 것일뿐 아니라, 조선이 國際公法 질서의 일원이 되어 지금까지의 중국과의 조공책봉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종주국을 자처해온 淸이 이를 방치하지 않았다. 임오군란은 淸에게 이탈을 꾀하는 조선의 발목을 잡는 구실과 기회를 제공하였다. 청은 군란 진압을 구실로 군대를 한반도에 진출시켰고 이는 곧 바로 내정간섭체제로 이어

졌다. 이에 국왕 고종이 주도하던 開明政策은 난관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었다. 朝日修好條約 이후 한반도 진출을 꾀한 일본도 淸의 이러한 일방적 진출에 뒷걸음질 칠 수 밖에 없었다. 일단의 개명관료들이 청의 이러한 폭압에 반발하여 甲申政變(1884년)을 일으켰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국왕의 입지를 더 좁히는 것뿐이었다.

임오군란 후에 형성된 형세는 淸日戰爭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돌아감으로써 청국 대신 일본이 내정개혁을 명분으로 조선의 내정에 깊이 간여하였다. 이에 대해 왕실이 三國干涉을 배경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측은 왕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일본의 이러한 폭압으로 궁지에 몰린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의 도움을 받아 이튿날 아관파천을 단행하여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 이듬해 1897년에 명실상부한 자주독립국가로서 大韓帝國을 출범시켰다. 1870년대 후반에 기하기 시작한 부국강병을 20년이 지난 이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실현시켜볼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서양의 여러 정치제도 및 사상은 개항 전후에 이미 알려졌다. 1880년대 중반 漢城旬報, 漢城週報 등이 간행된 시점에서는 여러 정치제도와 사상 심지어 사회주의까지 알려졌다. 그러나 조선의 君臣들은 군주정의 잇점을 강조하면서 왕정체제 자체에 어떤 변동을 가져올 생각은 하지 않았다.<sup>(1)</sup> 「아관파천」 후 명실상부한 독립국으로 새로 출범하는 마당에서 皇帝政의 제국체제를 택한 것도 그러한 입장을 관철하거나 더 강화한 것이었다. 이 시기의 시대적 여건으로 보아, 절대군주정체제 고수는 곧 근대화를 거부하는 자세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서양식 근대화를 추구해야 한다면 共和政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立憲君主制를 택하는 변혁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 그런데 당시의 위정자들이나 지식인들 사이에서 서양의 정치제도나 사상에 대해 처음부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입헌군주제만 하더라도 1880년대 말의 저술인 兪吉濬의 『西遊見聞』에서 비로소 나타난다. 공화제에 대한 인

(1) 漢城旬報, 週報의 정치론에 대해서는 이수룡, 「漢城旬報에 나타난 開化·富強論과 그 성격」, 『손보기박사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8, 749쪽 참조.

식과 관심은 1896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대한제국의 출범 후 이를 실천하려는 세력이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sup>(2)</sup> 이런 상황은 전제군주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이 약하거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서양의 정치제도에 대한 정보가 들어온 이상 이런 無挑戰, 無論爭의 상태를 세제정세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 돌릴 수는 없다. 그리고 유교정치라고 하더라도 조선건국 때의 爲民意識이 이때까지 상하의 정치적 자각, 욕구를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의 군주정은 조야, 상하가 불만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어떤 변동을 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글은 이에 대한 답으로, 고종이 영조, 정조 등에 의해 정립된 民國 정치이념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펴고 있었던 사실을 주목해 보고자 한다.

민국 정치이념은 백성과 군주가 곧 나라의 주체라는 의식으로, 귀족관료층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대목이 근대 지향성을 느끼게 한다. 나아가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제정하게 된 國旗의 도안에 이 사상을 담은 사실이 확인된다. 1883년 1월에 공포된 「國旗」는 1897년에 출범한 대한제국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었듯이 민국 정치이념은 대한제국 황제정의 사상적 기반으로도 그대로 전승되었다. 대한제국 황제정의 정치이념은 여러 각도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시론적으로 국기문제를 중심으로 그 맥을 짚어보고자 한다.

## 2. 國旗 창안에 관한 여러 설의 검토

국기 제정에 관한 공식 기록은 『高宗實錄』 권 20, 고종 20년(1883) 1월 27일조의 다음과 같은 짧은 기사가 전부이다.<sup>(3)</sup>

(2) 독립협회의 일부 회원들이 일본에 망명 중인 박영효와 연결되어 그를 대통령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지만, 이는 순수한 국내 세력의 움직임이라기 보다는 대한제국의 황제정을 교란시키려는 일본측의 사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태진, 「서양 근대 정치제도 수용의 역사적 성찰」, 『震檀學報』 84, 1997, 109~117쪽 참조.

(3) 필자는 이보다 좀더 자세한 기록을 구하고자 『日省錄』과 『承政院日記』의 해당 연월일조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일성록』은 고종 8년 정월 부분이 失傳 상태이며,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아뢰기를, “國旗가 지금 製造되었으니 八道 四都에 行會하여 認驗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이를 윤허하였다.

공식기록이 이처럼 짧기 때문에 그 기원에 관한 설들이 분분했다. 본 논문은 국기로 제정된 태극기 도안의 의미 파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본론에 앞서 그간에 제시된 국기 창안에 관한 여러 설들을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국기는 애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은 전문가, 비전문가의 경계가 없었던 것 같다. 그 가운데 기론의 대상이 될만한 것들을 제시된 시기 순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4)</sup>

### 1) 李滄遠 제안설

文一平이 「太極國旗의 由來」란 짧은 글(『湖岩全集』권 3, 史譚 수필편 106~107쪽, 조선일보사, 1939)에서 언급한 것이다. 즉 임오(1882년) 이후에 공주관찰사 이종원이 제출한 태극팔괘의 도식에 의해 비로소 태극으로써 국기를 결정하였다고 하고, 태극기를 맨처음 사용하게 된 것은 박영효가 일본에 특파대사로 갈 때였고, 그후 박정양이 미국 공사로 갈 때도 미국 함선에서 이 태극 국기를 내걸었다고 하였으며,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것은 乙未

『승정원일기』의 해당 연월일(光緒 9年 癸未 正月 二十七日)의 기록은 실록의 그것과 꼭 같았다. 실록이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해당 관청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日記(『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규장각도서 17836)를 찾아본 결과, 이것도 초반부 3책이 失傳하고 고종 20년 8월부터 기록이 시작되어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국기 제정의 사실은 실록을 제외하고는 중요 관부 기록들에서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다.

(4) 1948년 8월 대한민국정부 수립후 등장한 「우리국기보양회」(회장 金一秀)가 낸 『국기해설』의 1872년 제정설은 비전문가적 견해로서 가장 조악한 것에 해당한다. 이 책자는 1876년의 개국을 1872년으로 잘못 알고 이때를 또 국기 제정의 시기로 서술하는 등 사실 파악에서 큰 오류를 범하여 설로서 취급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리선근, 「우리 국기 제정의 유래와 그 의의」(『국사상의 제문제』, 1959)에서 자세하게 지적되었다.

국기 제정에 관한 제설에 대한 검토로는 리선근, 「우리 국기 제정의 유래와 그 의의」(『국사상의 제문제』 2, 1959, 193~194쪽)에서 처음 있었고, 최근 김원모교수가 『태극기의 연혁』(행정자치부, 1998년 5월)에서 다시 정리하기도 하였다. 양자는 모두 본고의 정리에 참고가 되었다.

(1895) 이후의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소개는 전혀 출전을 제시하지 않아 설득력이 없다.<sup>(5)</sup> 『高宗實錄』에 의하면, 이종원은 고종 32년 4월 초 1일에 농상공부 농무국장으로 임명된 적이 있고,<sup>(6)</sup> 같은 해 9월 초 4일에 公州府觀察使로 임명되어 위의 소개와는 시간적 차이가 많다.<sup>(7)</sup> 공주관찰사가 최종 직함으로 사용되었다면 몰라도 그 직함 시에 제안을 했다면 시기가 맞지 않는다. 어쨌든 그의 관여에 관한 더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는 한 이를 중요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2) 日本公使 하나부사(花房義質) 제안설

1932년에 일본인 宮武外骨이 「朝鮮の國旗 花房義質の提案」(『壬午鷄林事變』(近藤印刷所, 1932)이란 글에서 “조선은 하나부사 공사의 전의를 기본으로 하고 우리 외부성의 경고에 따라 龍旗를 국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한 다음, 하나부사 공사는 본래 태극의 문양을 3파(三ツ巴)로 했지만, 실제로는 二ツ巴의 태극기를 국기로 채택하였다고 하였다(60~63쪽). 이 주장은 하나부사 공사가 조선에서 국기를 최초로 사용한 修信使 朴泳孝 일행이 1882년 8월(음력)에 일본으로 가면서 승선한 배(明治丸)에 동승한 사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후술하듯이 국기 제정의 과정을 소상하게 밝힌 박영효의 『使和記略』에는 하나부사 공사의 관여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 3) 高宗 창안설

일본의 『時事新報』 1882년 10월 2일 자(제179호) 「朝鮮の維新」이란 글의 다음과 같은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明治編年史』, 新聞集成 明治編年史編纂會, 1935, 권 5, 156쪽).

“지금까지 조선에는 국기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支那(중국)로부터 來到한 馬建忠이 조선의 국기는 支那 것을 모방하여 삼각형 청색 바탕에 용을 그려 쓰도록

(5) 김원모, 윗 글, 32쪽.

(6) 『고종실록』 국사편찬위원회 간행본 中卷, 559쪽 a

(7) 같은 책, 중권 571쪽, d. “九品李淙遠, 任公州府觀察使, 敍勅任官四等.”

하였다. ... 국왕은 이를 크게 분개하여 결단코 支那旗를 모방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사각형의 옥색바탕에 「태극의 圖」(太極兩儀)를 청적색으로 그리고 기의 네 귀퉁이에는 동서남북의 역괘를 붙여서 이제부터 조선의 국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時事新報』의 위 기사를 주목한 리선근은 이에 관한 자세한 논증 끝에 “조선 국왕 스스로 태극 국기의 채용을 하명하였다는 점, 그 얼마나 통쾌하게 생각할 것이냐?”는 언급과 함께 고종 창안설을 적극 지지했다.<sup>(8)</sup> 고종 창안설은 후술하듯이 본고의 논지와 가장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없지 않다. 김원모는 『時事新報』 측이 이런 보도를 낸 데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사실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의 논점은 다음과 같다.<sup>(9)</sup>

먼저 다음과 같은 정황 파악을 통해 위 기사 중의 馬建忠의 고종 알현 자체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다. 馬建忠은 1882년에 두 차례 조선에 왔다. 4~5월(양력) 간에 朝美修好通商條約 체결을 後見할 목적에서, 그리고 8월(양력)에 임오군란 수습 목적에서 왔다. 국기 제정에 관해서는 전자 때 많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번에 支那로부터 來到한 馬建忠 운운”의 『시사신보』 기사는 10월 2일(양력)자이므로 후자에 해당한다. 이 제2차 때 마건충은 8월 10일에 인천에 도착하여 8월 26일 大院君을 압송한 것이 주 임무로서 고종을 알현하여 국기문제를 논의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위 「朝鮮の維新」은 사실은 修信使 朴泳孝가 국기를 처음 사용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주된 논지로서, 기사 중의 마건충의 龍旗 사용 강요는 어디까지나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 간섭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므로, 고종의 분개 자체도 허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종은 실제로 청의 속방화 정책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고 또 그 때문에 청측에서 양위 계획까지 검토했던 사실이 있으므로 청측의 龍旗 사용 요청에 대한 분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위 기사의 내용도

(8) 리선근, 「우리 국기 제정의 유래와 그 의의」, 『국사상의 제문제』, 200쪽, 1959.

(9) 김원모, 앞 글, 33~35쪽.

사실은 국기 제정 과정에 관한 것이므로 국기에 관한 논의가 많았던 제1차 때의 것으로 보면 아무런 무리가 생기지 않는다.

#### 4) 馬建忠 참안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때 이를 후견하기 위해 온 馬建忠의 의견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주장은 權錫奉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權錫奉, 「國旗制定의 유래에 관한 管見」, 『歷史學報』 23, 1964).<sup>(10)</sup> 이 주장은 奎章閣 소장의 「淸使問答」이란 자료<sup>(11)</sup>에 근거한 것으로,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마건충은 한국측과의 여러 차례의 접촉에서 4월 6일(양력 5월 22일) 淸船에서의 문답, 4월 11일(양력 5월 27일) 南館에서 이별할 때의 문답 등 두 차례의 문답에서 조선의 국기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는데, 전자에서는 중국 龍旗(황색 바탕에 청룡 그림)를 본떠 흰색 바탕에 청운(靑雲)과 紅龍을 그린 그림을 사용할 것을 권하였고, 후자에서는 조선측의 태극도안(李應浚 鑒正本)을 보고 백색 바탕에 太極八卦圖를 그린 것을 취하되 팔괘의 의미를 팔도와 연결시켜 이를 권장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되어 있다. 권석봉은 후자가 태극기 탄생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라고 보고, 중국 사신이 국기의 도안을 제안한 것은 불쾌하지만, 엄연한 사실이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청나라 측이 조선에게 중국 용기를 본떠 사용토록 하는 안은 1880년의 黃遵憲의 『朝鮮策略』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4월 6일 문답에서 馬建忠이 백색 바탕에 靑雲 紅龍을 그려 사용토록 한 것은 물론 이를 답습한 주장이었다. 그런데 4월 11일의 문답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로 태극팔괘도를 말했다. 즉 이응준의 감정본을 보고 팔괘의 의미로 팔도 운운하였던 것이다. 이 발언은 창안이라기 보다는 귀국을 눈앞에 두고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간여키 어렵다는 판단 아래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몇 마디 붙인 것에 불

(10) 권석봉의 견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권 23, 19~20쪽. 「태극기 제정유래」에서도 피력되었다.

(11) 全海宗, 「淸使問答」(자료소개)(『歷史學報』 22, 1964) 1882년 3월 27일부터 4월 11일까지, 全權大官 申櫛, 副官 金弘集, 淸使 馬建忠, 丁汝昌 간의 문답.

과한 정도의 얘기이다. 이를 가지고 태극기가 마건총의 창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평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sup>(12)</sup>

### 5) 李應浚 창안설

1882년 4월 조미수호조약 교섭의 조선측 수행원이던 이응준이 창안하였다는 설로서, 김원모가 1992년에 처음 제기하였다.<sup>(13)</sup> 근거자료로는 위에서 언급한 「청사문답」(1-1이라고 함)과 슈펠트제독 문서 중의 「한국과의 조약의 역사」<sup>(14)</sup>(1-2) 등 두 가지를 들었다.

먼저 (1-1)의 관련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가) 1882년 4월 6일(5월 22일), 淸船에 가서 한 문답에서, 마건총이 “귀국도 遠人들(외국인; 필자)에게 보여줄 국기가 없어서는 안됩니다”라고 하면서 “어제 李應浚이 소매에서 꺼낸 旗識”를 언급하였는데, 그 모양이 일본의 국기와 매우 비슷하다고 한 것, (나) 4월 11일 南館에서 이별할 때의 문답에서 우리측이 마건총에게 “李應浚의 鑿正本을 보고 일본과 흡사하다고 하였는데, 홍색 바탕에 청백을 배합하여 圓을 그리면 비슷함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완곡하게 馬의 의사를 타진한 부분 등이다.

김원모는 이 기록들에 근거해 1882년 5월(양력) 조미수호통상조약 교섭 중에 미국함(Swatara)과 청국함(威遠號)를 왕래하면서 교섭 실무를 담당한 李應浚이 태극도를 고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가 이를 고안한 데는 미국측 대표 슈펠트 제독의 권유가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즉 1882년 5월 14일 南陽府의 大同船을 타고 스와타라 호를 예방했을 때, 슈펠트 특명전권공사가 조약체결시 삼각형 용기를 버리고 새로 조선 국기를 제작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위 「한국과의 조약

(12) 김원모는 마건총 창안설에 대해 이응준 창안설로서 반박하였다. 金源模 「朝美條約締結 研究」, 『東洋學』 22, 63~65쪽, 1992.

(13) 金源模, 앞 「조미조약 체결연구」.

(14) Shuffeldt Papers: Letters(The Collections in the Manuscript Division, Library of Congress), “The History of the Treaty with Korea, An Incident in the Life of Rear Admiral R. W. Shufeldt, December, 1898; 김원모, 「朝美條約 締結史」 『史學志』 25, 1992, 197~198, 207쪽.



의 역사」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들었다.

(1-2) “조약은 제물포에서 예포가 울리고 깃발들이 나부끼는 가운데 서명되었다; 한국인들은 작은 깃발들과 약간 더 큰 길쭉한 깃발들(pennons)만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의 국기는 스와타라 선상에서 이 식을 위해 만들어졌다(한국인들은 그때까지 작은 깃발들과 약간 더 큰 길쭉한 깃발들(pennons)만 사용했다).” [“The Treaty was signed at Chemulpo, amidst the salutes of cannon and the waving of flags: a Korean national banner(flag) having been made on the Swatara for the occasion (for the Koreans up to that time had used only the small flags, or rather large pennons) as the Koreans had only their small flags or rather large pennons.”]

위 인용문에 의하면, 슈펠트는 조선 국기가 조인식을 위해 스와타라 선상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했다. 김원모가 지적하듯이 일반적으로 수신사 박영효가 明治丸을 타고 일본으로 가던 도중, 1882년 10월 3일에 태극기를 조선 국기로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보다 4개월 반 전인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인식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히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제작을 수행원인 이응준이 한 것이라던지, 당시의 국기의 모양이 8괘나 4괘가 없는 「太極圖形旗」인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김원모가 파악하는 태극도형기 제작의 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82년, 5월 14일, 전권대관 신헌, 부관 김홍집이 수행원 李應浚을 대동하고 스와타라호를 예방하였다. 이때 미국 특명전권공사 슈펠트는 이번 역사적인 조미조약 조인식에서 미국 성조기와 나란히 조선 국기를 게양하고 조약체결을 엄수하자고 제안하면서 국기제정을 권고했다. 이에 김홍집은 이응준에게 급히 국기제작을 지시하자, 이응준은 마침내 「太極圖形旗」를 제작했다. 이것이 바로 태극기 제정의 기원이 되고 있다.”(김원모, 1998, 34쪽)

김원모의 파악에 의하면, 이응준의 「태극도형기」는 비록 대관, 부관 등의 지시에 의한 것이지만 순전히 스와타라 선상에서 응급적으로 수행원 이응준의 아이디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관련자료는 정황을 반드시 그렇게 정리하게 하지 않는다. 위 (1-2)의 자료는 분명히 스와타라 선상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였지만, 이는 미국측이 그 의미를 높이기 위해 그렇게

서술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조선측이 국가의 상징인 국기 제정문제에 대해 그 사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다가 미국측이 요구한다고 해서 즉석에서 응했다는 것도 석연치 않다.<sup>(15)</sup> 실제로 대관 신헌, 부관 김홍집이 이응준에게 지시하여 이응준이 즉석에서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다. 이에 관련되는 기록은 (1-1)의 (나)에서 마건충이 “어제 李應浚이 소매에서 꺼낸 旗識”를 보니 그 모양이 일본의 국기와 매우 비슷하다고 한 것 뿐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응준은 수행원으로서 준비된 안을 보관하는 자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기치(이응준의 감정본)의 형태도 일본 것과 비슷하다고 했지, 4괘나 8괘가 없다는 지적은 없다. 그러므로 위의 기록들을 통해서,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당시에 우리측이 국기를 처음 사용했다는 것, 그 모양이 태극기와 유사한 것이었다는 것 등을 확인하는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

국기란 것은 결코 한 개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응준이 소지한 것에 대해 「李應浚鑒正本」이란 용어가 붙었지만, 한 수행원이 그런 중대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당시 조선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용기 사용 여부로 청국 사신들과 미묘한 외교적 긴장 관계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의 공식적인 결정사항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조정에서 실제로 논의한 것이면서도 일개 수행원인 이응준이 만든 것처럼 가장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설령 한 개인의 착상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왕의 허가없이는 결정될 수 없는 것이 국기 문제이다.

(15) 김원모는 「조미조약체결 연구」 『東洋學』 22, 61쪽에서 슈펠트 문서(Shuffeldt Papers)의 「조미조약체결사」에 “조선정부는 조미조약체결때까지 삼각기를 사용했다고 명기하고 있다”고 하여, 1880년 황준헌의 『조선책략』 후 청나라 李鴻章의 강권에 의해 중국 용기를 본딴 삼각형의 청용기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슈펠트의 「조미조약체결사」에는 삼각기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다. 슈펠트는 “small flags” “rather large pennons”라는 표현만 사용했는데, 혹시 pennons를 삼각기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 한다. Pennon은 “a long narrow pointed flag, esp. as carried on the end of a lance(=spear) by soldiers on horseback”란 뜻으로 반드시 3각형의 국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복수형으로 pennons라고 했으므로 각종 휘장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옳다.

조선 국기 제작에 슈펠트 제독의 권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이해도 문제가 있다. 위 미국측 자료에는 분명히 그렇게 서술되어 있지만, 조선측이 새로운 국제관계 수립에 국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1876년의 조일수호조약 때 이미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였다.<sup>(16)</sup> 이 조약 수립후 일본측이 건넨 자료 가운데 「宮本小一手録」이란 자료가 특별히 국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국기는 어느 나라에서나 “至貴至重之物”이라고 하면서 그 용도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sup>(17)</sup> 따라서 국기 제작의 필요성은 이때부터 이미 인식되고 있던 것으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국기제작 문제는 어느 특정한 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보다 1876년의 개항 후 조선 조정이 스스로 취했을 입장을 확인하는 방향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국기 제정과 奎章閣 소장의 「御旗」

앞에서 국기 제정에 관한 기존의 여러 설들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기원에 대해서는 이처럼 논란이 많지만, 1882년 8월에 朴泳孝가 제3차 修信使로서 明治丸을 타고 일본으로 가던 중에 국기를 제정하여 첫 기숙지인 고베(神戸)의 숙소에서 처음 내걸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그가 쓴 일기(8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인 『使和記略』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기 제정 과정에 관한 검토는 역시 이 자료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밑줄은 필자).

(2-1) 8월 14일 맑음. 오전 4시(寅正)에 고오베에 도착하였다. …… 8시(辰刻)에 소륀선을 타고 하륙하여 西村屋 歇下에 도착하였다. …… 새로 만든 국기를 寓樓에 걸었다. 깃발 장대(竿)에 흰색 바탕을 종으로 펴서 길이가 폭의 5분의 2에 미치지

(16) 1875년 雲揚號 사건 때 일본측이 국기에 대한 모독을 시비한 것에 대해서는 리선근, 앞 논문, 190~191쪽 참조.

(17) 『高宗實錄』 권 13, 고종 13년 2월 초3일, 상권 52쪽, d.

않게 하여 중심에 태극을 그려 청색 홍색으로 채우고 네 모서리에 전·곤·감·리의 4괘를 그렸으니 일찍이 상에게서 명을 받은 적이 있다.

(2-2) 8월 22일, 맑음. 부산으로 가는 선편에 狀啓를 마련해 올렸다. 절충장군 행 용양위 부호군 전권부관 겸 수신부사 臣 金, 상보국승록대부 특명전권대신겸 수신사 臣 朴. 이달 초 9일 巽時 쯤, 인천부 제물포로부터 배를 뺀 경유는 이미 보고를 올렸습시다만, (중략) 14일 묘시쯤에 고베에 도착해 하룻하고 곧 店舍에 투숙하여 기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東京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국 국기를 새로 만드는 일은 이미 처분이 있어 지금 대·중·소 3本을 만들어 그중에서 小旗 1本을 올려 보내면서 연유를 급히 아뢰오니 ……. 開國 491년 壬午 8월 22일 午時 ……

特命全權大臣兼修信使 朴이 相彥事를 위해 지금 시급히 啓聞할 일을 위해 修啓하여 보내며 啓本 하나는 機務處에 가는 것으로 서간을 하나로 封하여 선편에 부칩니다.

右關

東萊府使

開國491년 壬午 8월 22일 准此

特命全權大臣 朴 押

#### 送機務處書

國旗의 標式은 明治丸에 있던 중에 영국 영사 아스톤과 상의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선장인 영국인이 사해를 두루 돌아다녀 각국 국기의 표장을 잘 알고, 또한 각 색의 분별과 원근의 異同까지 두루 洞知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商議했습니다. 그랬더니, 태극에 8괘를 그린 도식은 특별한 빛깔로서 아름다우나, 여덟 개의 괘를 태극 주위에 분포해 놓으면 너무 획이 조밀하고 복잡하여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또 여러 나라에서 이것을 보고 제작하는 것도 심히 불편할 것이므로 단지 4괘만을 사용해 네 모퉁이에 劃해도 아름다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외국에서는 국기 외에 반드시 君主의 旗가 있는데 그 표시는 대개 국기의 모양을 따고 채색과 무늬를 놓아 繁鮮을 아주 화려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국기의 대·중·소 각 1本을 그 선장으로 하여금 裁製케 하고 小 1本을 지금 장계를 지어 상송하는 바입니다. 主上旗의 標章(旗號)은 태극을 가운데 두고 8괘를 기의 邊幅에 빙 둘러 놓음(拱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바탕(質)은 紅色을 專用하는 것이 선명할 것 같습니다. 이미 각국과 통호한 후에는 무릇 사신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 예의상 국기는 없을 수 없습니다. (하략)

위 인용문의 주요 내용을 편의상 다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sup>(18)</sup>

(가) 박영효는 특명전권대신겸 수신사로 明治丸(메이지丸)을 타고 일본으로 가는 船上에서 영국 영사 아스턴(Aston)의 소개로 영국인 선장 제임스(James)<sup>(19)</sup>의 자문을 받아 태극기 대·중·소 3本을 만들고 이를 8월 9일 고베(神戸)에 도착해 숙소 니시무라야(西村屋) 옥상에 처음 내걸었다.

(나) 당초에는 太極八卦圖를 제시했는데, 제임스 선장이 팔괘는 너무 복잡해 눈에 잘 띠지 않는 단점이 있으므로 四卦만을 네 모퉁이에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고, 본래의 태극팔괘도는 바탕색을 화려한 홍색으로 하여 君主旗로 삼기로 하였다.

(다) 8월 22일 고베에서 이를 보고하는 狀啓를 작성하여 부산으로 가는 船便을 이용해 東萊府使 앞으로 보냈다. 이때 새로 정한 국기 小本 하나와 統理機務衙門에 보내는 서신도 함께 동봉하였다.

위의 정리에서 드러나듯이, 박영효 일행은 타고가던 배의 선장인 영국인 제임스의 조언으로 태극 4괘의 국기 모양을 확정하였지만, 본래 「태극팔괘도」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제임스 선장은 팔괘도가 너무 복잡하므로 이를 4괘로 단순화 한 것을 국기로 삼고 팔괘기는 君主旗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을 해주었던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자료 (2-1)의 끝에 “일찍이 상에게서 명을 받은 적이 있다”(曾有受命於上)고 한 부분이다. 이 구절은 문맥상으로 새로 제정한 국기를 그려 숙소의 寓樓에 내건 일 전체에 걸린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당초 국왕이 「태극팔괘기」를 주면서 사행중 이를 국기로 사용하라는 명을 주었는데, 지금 국기를 태극사괘기로 정해 시행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수신사 일행은 국왕으로부터 사행중에 사용할 「태극팔괘기」를 수령하였던 것이 분명하며, 그렇다면 앞에서 문제된 4개월 여 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시에 사용했다는

(18) 이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는 리선근의 「우리 국기 제정의 유래와 그 의의」(1959)가 가장 앞섰던 것 같다.

(19) 『사화기략』에는 선장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으나, 리선근 앞 논문(195쪽)이 『日本外交文書』 제15권 210면의 해당 기록을 통해 明治丸 선장이 제임스였던 것을 밝혔다.

「이용준 감정본」도 태극팔괘도였을 가능성이 있다.<sup>(20)</sup>

제임스 선장의 자문을 거쳐 군주기로 낙착된 「태극팔괘기」는 다행히 규장각 도서 중에 관련자료가 전한다. 奎章閣圖書 중의 「御旗」(奎 26192, 그림 자료 1)가 바로 그것이다.<sup>(21)</sup> 이 태극팔괘도(바탕 45cm × 35.8cm, 깃발 31.5cm × 24cm)는朴의 보고에 “主上旗의 標章(旗號)은 태극을 가운데 두고 8괘를 거의 邊幅에 빙둘러 놓음(拱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바탕(質)은 紅色을 專用하는 것이 선명할 것 같습니다”라고 한 것과 일치한다. 그림의 상단에 써놓은 御旗란 명칭도 主上旗, 君主旗 바로 그것이다. 이 어기의 제작 연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 바탕색이 홍색으로 박영효의 보고에서 말한 것과 같으므로 그의 보고 후에 그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본래의 태극팔괘도가 어떤 색깔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알 길이 없다).

당초의 국기도안이 태극팔괘기였다는 것은 이상의 점토로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 도안이 언제 만들어졌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가 문제가 된다. 전자의 시기문제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은 1881년(고종 18) 윤 7월에 이후로는 외국과의 교섭에서 국호를 大朝鮮이라고 칭하게 한 사실이다. 국왕은 이때 외교용 國璽로서 「以德之寶」 대신 「大朝鮮國寶」를 새로 제조하여 사용케 하고, 국왕의 호칭도 主上에서 大君主로 바꾸도록 하였

(20) 이 무렵에 괘가 없는 태극도는 사례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1) 이 「御旗」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태극기선양회의 한 인사의 말에 따르면, 어기의 가운데 태극이 송나라 周敦頤의 「太極圖說」의 태극과 유사하여 비주체적인 것이라고 하여 지금까지 의식적으로 무시했다고 한다. 필자는 이 발언을 듣고 놀랐다. 「태극도설」식의 태극 음양 표시와 태극기 식의 태극 음양 표시는 분석적인 것과 회화적이란 차이밖에 없는 것이다. 주돈이의 「태극도설」 이후 중국에도 태극기식의 태극 음양 표시는 수없이 많으므로, 「태극도설」식의 표현을 빌린 「어기」의 태극도를 중국식이라 하여 무시했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김원모도 『태극기의 연혁』(1998, 8. 행정자치부) 106쪽에서 「어기」의 그림에 대해 「중국 주돈이의 태극팔괘도」라는 제목을 달았다. 놀랍게도 이 사진은 그림의 상단에 적혀 있는 「御旗」란 제목을 없애고 어기란 명칭이 붙은 것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 후술하듯이 「어기」의 태극도 부분은 주돈이의 것과 유사한 것 같지만 태극의 가운데 동그라미까지 半分하여 태극 자체를 반으로 나누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태극의 가운데 흰 동그라미 마저 음양을 나누는 것은 중국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이 점이 바로 우리 태극기의 혁명성과 유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 260쪽 참조.

다.<sup>(22)</sup> 조미수호통상조약 약 1년 전에 이루어진 이 조치는 조선의 개화정책 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조선은 지금까지 중국의 전통적인 조공책봉질서 속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이로부터 벗어나 명실상부한 독립국으로 새로운 국제질서에 편입하는 것이었다. 국호를 大朝鮮, 왕의 칭호를 大君主로 바꾸도록 한 것은 나라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이면적 의도는 중국중심의 질서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었다. 조선 정부의 그런 의도는 약 1년 뒤 미국과의 수호통상조약 체결에서 명백하게 드러났고, 청나라는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선의 발목을 잡는 정책을 펼던 것이다. 어쨌든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인식때 조선의 국기가 구체화되어 사용되었다면 그 논의는 대조선 칭호의 사용과 시기를 같이해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대외용 국호의 조정과 국기의 제정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국기제정의 경위는 결국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즉 조선정부는 1876년의 조일수호조규 이후 새로운 국제관계 수립의 필요성을 느껴 1880년 12월에 국제관계를 전담하는 새로운 부서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1881년 윤 7월에 국교 관계에서 사용할 국호를 大朝鮮으로 높이는 조치를 취한 단계에서 국기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1882년 5월의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시에는 태극팔괘기가 이미 준비되어 미국측의 국기 사용제안에 그대로 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후 1882년 8월의 수신사의 일본 사행에서도 같은 태극팔괘기를 사용하게 했는데, 선상에서 영국인 선장의 자문을 받아 이를 더 단순화한 태극사괘기가 국기로 탄생하고 태극팔괘기는 군주기로 낙착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남은 문제는 태극사괘기의 모태가 된 太極八卦旗는 어디에서 유래하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22) 『고종실록』 권 18, 고종 18년 윤 7월 27일조, 중권 19쪽, b.

“敎曰, 지금부터 信使가 國書를 가지고 갈 때 「以德之寶」를 사용하지 말고, 「大朝鮮國寶安寶」를 조성하라. 新造의 절목은 本所로 하여금 호조에 분부케 하라” 대군주란 칭호는 1882년 8월 30일 체결의 「조일수호조규속약」을 위한 전권대신 위임장에서부터 사용되었다. 일본외교사료관 소장 위임장 원본에 의하면 이때 「大朝鮮國大王」이란 호칭이 사용되었다.

## 4. 「御旗」의 太極八卦圖의 유래와 民國 정치 이념

주지하듯이 팔괘도에는 「伏羲先天八卦圖」와 「文王後天八卦圖」가 있다(그림 자료 2). 「어기」의 팔괘는 이중 「文王後天八卦圖」의 팔괘와 같다. 복희씨의 先天은 우주 생성의 원리를 표시해 만든 것이고,<sup>(23)</sup> 後天은 周나라 文王이 인간의 治世에서 이를 실현하는 원리로 전용하여 형상화 한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국기 태극기에 대한 해석은 거의 모두 「伏羲先天八卦圖」의 우주 자연 생성의 원리쪽에서 의미를 구했다. 그런데 『사화기략』의 관련기록에 의해 태극사괘기의 원형이 「문왕후천팔괘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태극기의 의미에 대한 풀이도 마땅히 이쪽에서 구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주 자연 생성의 원리보다 인간의 치세의 원리 곧 정치사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조선후기 왕정에서 「문왕후천팔괘도」가 가지는 의미를 밝혀줄 자료로서 奎章閣 도서 가운데 필사본으로 전하는 『啓蒙圖說』(奎章閣圖書 1128, 4369, 1帙6권3책)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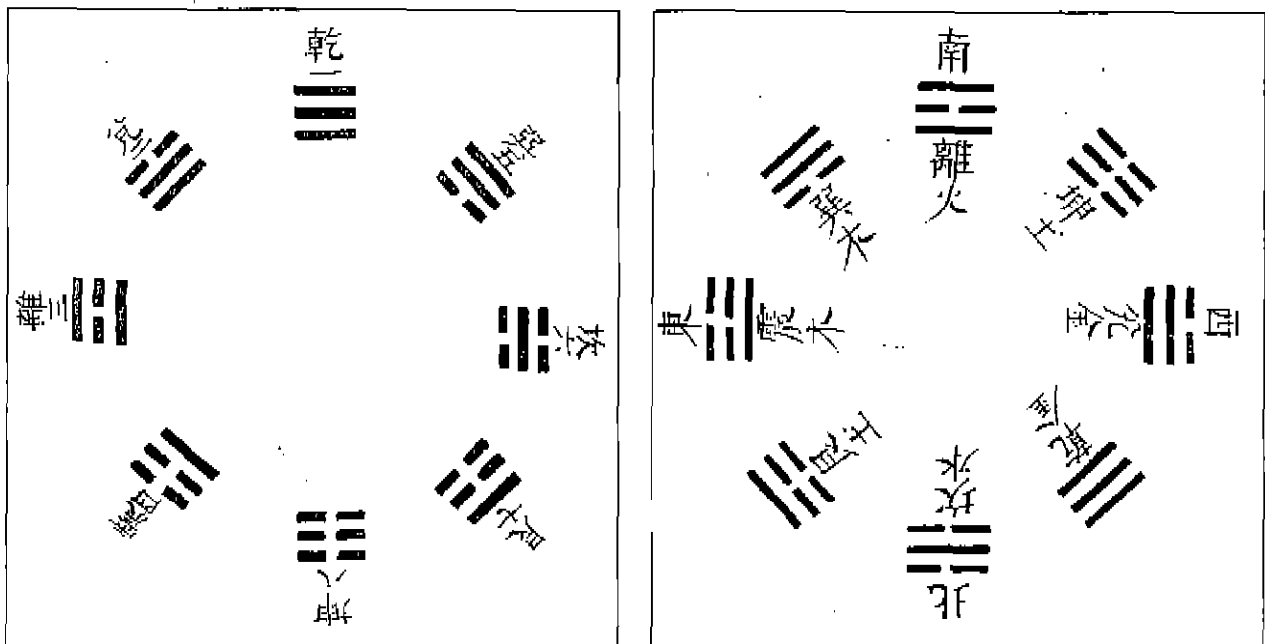


그림 자료 2. 伏羲先天八卦圖(좌)와 文王後天八卦圖

(23) 先天易의 八卦는 天·澤·火·雷·風·水·山·地를 뜻하며, 太極→陰陽→八卦로 放射되어 가는 무한한 에너지(氣)에 대한 인식으로 그 八卦圖가 靈力이 있다는 신앙도 생겼다고 한다. 三浦國雄, 『氣의中國文化』(東京, 創元社, 1994) 309쪽.



이 책은 1772년(英祖 48)에 正憲大夫 예조판서 겸 知經筵事 世孫 左副賓客 徐命膺이 세손(正祖)의 『周易』에 대한 높은 관심을 돕기 위해 지은 것이다. 서명응이 쓴 跋文에 의하면, 세손은 주역 공부에서 伏羲의 先天易과 文王의 後天易의 관계를 푸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즉 “造化의 體를 담은(涵)” 先天易과 “人事의 用을 넣은(入)” 後天의 易의 상관관계를 掛圖로 푸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서명응은 주역 연구의 변천사에서 孔子의 『繫辭』 이후 朱子가 周濂溪의 嫡傳으로 邵康節의 오묘한 학문(濂學)을 겸하여 『周易本義』를 지어 후천의 역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후천은 선천에 근본한다고 하여 다시 『易學啓蒙』을 지음으로써, 先天을 공부할 수 있는 階梯가 마련되어 朱子 이후 5백년이 되는 동안 先天의 학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 이 책은 시작과 끝(端倪)을 잘 드러내지 않은 채(微發) 후학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하였기 때문에 후대의 學人들이 선천역과 후천역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한계를 낳은 점을 지적하고, 세손의 주역 공부는 곧 이 한계를 극복하는 데 역점이 두어진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 「先天變爲後天圖」를 얻은 것을 소개하였는데(권 4), 이것은 先天易圖의 팔괘를 바깥으로 하고 後天易圖의 팔괘를 안쪽에 붙인 것이다(그림 자료 3).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접배열에서 가운데 상하 자리에 온 卦들이 바로 태극기가 취하고 있는 乾坤離坎의 4괘란 점이다. 박영효 일행이 메이지마루 선상에서 제임스 선장의 자문을 받아 「태극팔괘기」를 단순화하여 「태극사괘기」를 고안한 데서 가장 의문시 되는 것은 어떤 근거로 팔괘중 乾坤坎離의 4괘를 택했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 「先天變爲後天圖」가 그 의문을 풀어준다.

제임스 선장의 자문 후 수신사 일행이 그린 태극사괘기의 4괘에 대해 위(2-1)의 자료는 乾坤坎離의 4괘를 네 귀퉁이에 그렸다고 했다. 그러나 수신사 일행이 東京 체류 중에 보도한 『時事新報』의 보도는 이와는 다른 형태의 「朝鮮國旗」의 그림을 실었다(그림 자료 4). 이 그림의 4괘는 震·兌·離·艮 등으로, 보도 기사 중 “네 귀퉁이에는 동서남북의 역괘를 붙여서”라고 한 것과 결부시키면 「문왕후천팔괘도」 중의 동서남북 방향의 4괘와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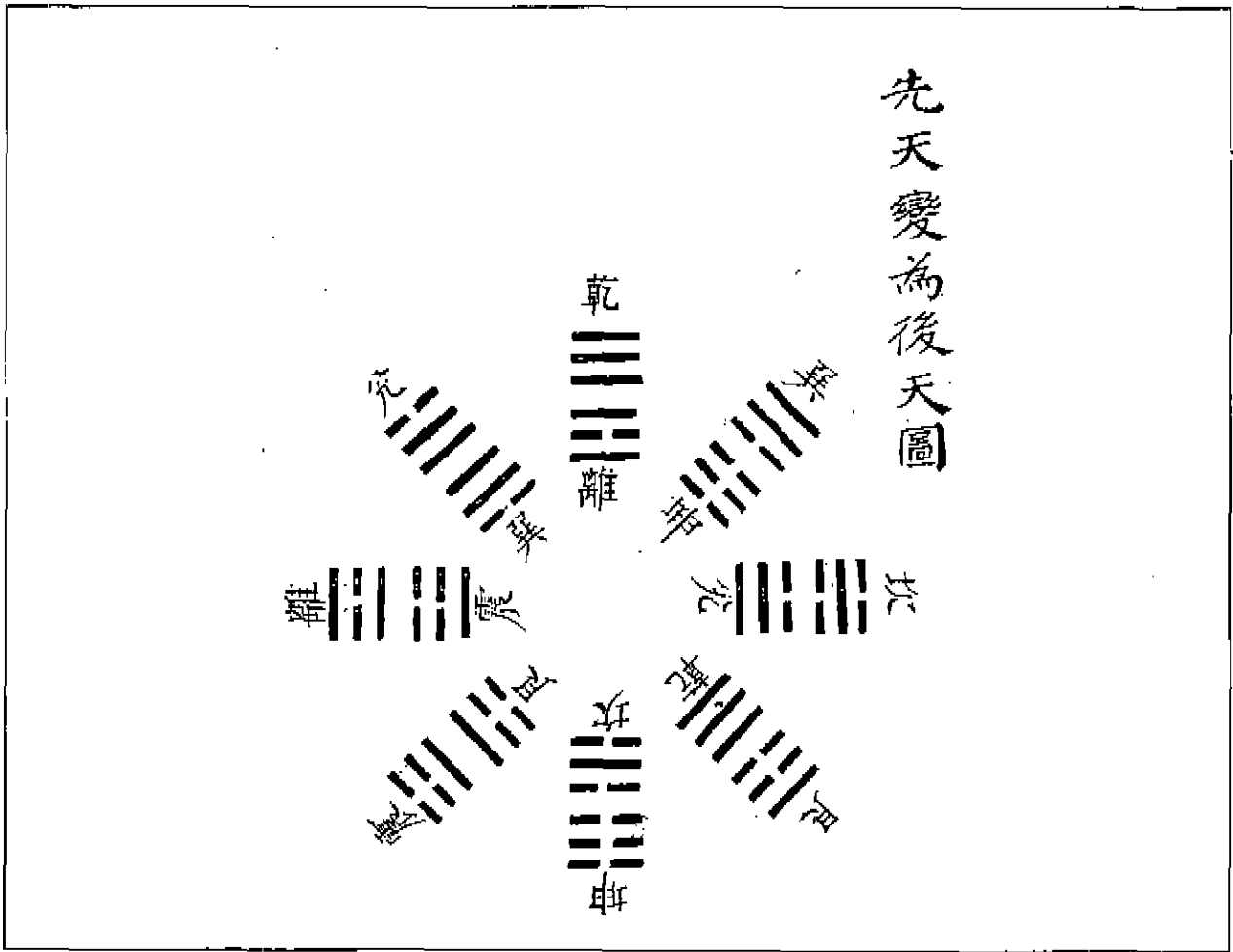


그림 자료 3. 『啓蒙圖說』의 先天變為後天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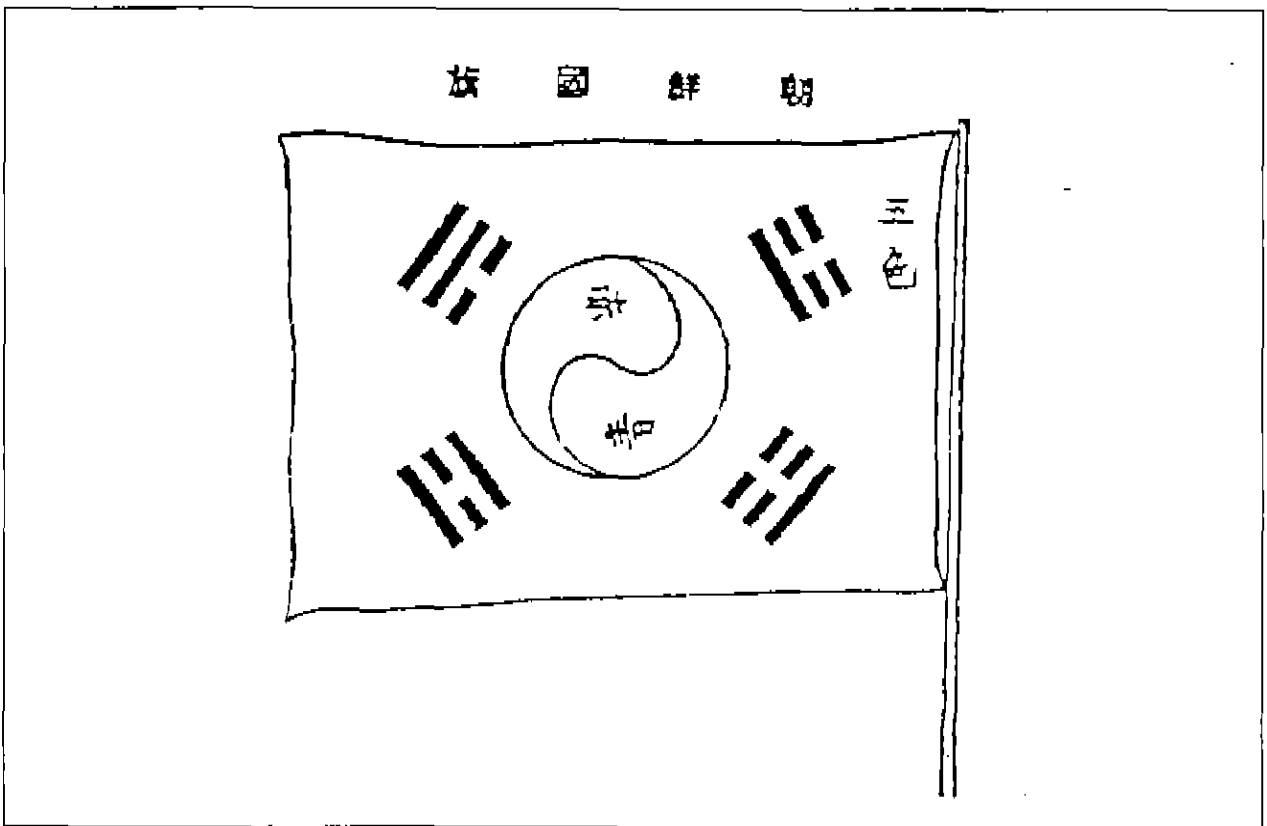


그림 자료 4. 日本『時事新報』에 실린 「朝鮮國旗」

치한다.<sup>(24)</sup> 『시사신보』의 그림에 대해서는 날조되었다는 비판도 있지만,<sup>(25)</sup> 수신사 일행의 숙소에 내건 국기를 보고 그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화기략』은 귀국 후 기록의 정리 과정이 있었을 수도 있으므로 건·곤·감·리 4괘란 표현이 나중에 조정에서 확정 발표된 것을 참고해 고쳤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제임스 선장의 조언으로 태극팔괘도를 단순화 하기 위해 갑자기 8괘 중 4괘를 택해야 하는 마당에서는 팔괘 중 정 동서남북 방향의 4괘를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조정에 보고된 뒤,<sup>(26)</sup> 그런 정방위 괘의 선택은 의미가 없으며, 굳이 4괘를 선택해야 된다면 「先天變爲後天圖」의 중심 축의 4괘로서 건·곤·감·리를 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판정을 내리게 되었을 것이다. 『계몽도설』의 「先天變爲後天圖」는 고종이 가장 받드는 선대왕인 정조의 정치사상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다.<sup>(27)</sup> 이런 경위로 확정된 태극기의 4괘는 곧 「先天變爲後天圖」의 원리 즉 “자연 조화의 體”를 “人事의 用”에 적용한다는 사상을 담은 것이었다.

그러면 正祖가 선천역과 후천역의 관계에서 구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곧 태극기가 표시하는 근본이념을 밝혀줄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그가 재위 22년째에 쓴 「萬川明月主人翁自序」(이하 「自序」로

- (24) 단 북방의 坎이 택해져야 할 것이 동북방의 艮이 택해졌는데 이것은 그런 사람의 착오였던 것으로 보인다.
- (25) 김원모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 보도를 신뢰하지 않으나(김원모, 1998, 112쪽), 당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중국의 연고를 배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조선이 독자성을 보이는 어떤 행위나 조치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필자는 당시의 일본은 국가의 상징인 국기 제정문제에 대해 근거없는 날조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본다.
- (26) 위 『사화기략』의 관련 자료 (2-2)에서 보듯이 수신사 박영효는 국기 제정에 관한 보고를 동래부사를 통해 통리기무처(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보냈다. 그러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일기』의 해당 연월의 기록이 註 3에서 밝혔듯이 失傳 상태여서 필자는 다시 『東萊府啓錄』(규장각도서 15105, 9책)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책도 1874년(同治 13) 2월 초8일(제8책 끝부분)에서 1883년(光緒 9) 癸未 7월(제9책 머리부분) 사이의 기록부분이 빠진 상태였다. 이 사이의 계록을 실은 책들이 없어진 것이다.
- (27) 규장각의 『啓蒙圖說』 두 질 가운데 규장각도서 1128번의 것에는 고종의 장서인인 「集玉齋」印이 찍혀 있다.

졸임)이다.<sup>(28)</sup> 정조는 이 글에서 民을 수많은 하천(萬川), 군주를 밝은 달(明月)에 각각 비유하여, 백성에 대한 군주의 관계는 밝은 달이 모든 하천에 하나씩 담겨 비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는 太極이 나뉘어 陰陽이 되고 음양이 四象이 되고 사상이 다시 八卦가 되는 순서를 밟아 16,774,200 卦畫에 이르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숫자를 “나의 蒼生(백성)의 數에 당한다”라고 언급하면서, 명월을 군주인 나이자 太極이라고 규정하였다.

달과 만천의 비유는 사실은 朱子가 먼저 사용한 것이다. 주자는 理(太極)와 만물의 性命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본래는 단지 태극은 하나이며 만물은 각기 稟受하고 또 스스로 각기 一太極을 全具하니 마치 달이 하늘에 있으면 하나일 뿐인데 江湖에 散在하게 되면 처한 곳에 따라 보이더라도 달이 나누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sup>(29)</sup>라고 하였던 것인데, 정조는 이 비유를 君主의 입장에서 정치학적으로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轉用하였다. 16,774,200 卦畫에 대한 주자의 『역학계몽』의 논평도 “易卦 변화의 무궁함이 이와 같도다”라고 한 것이었는데, 정조는 이를 자신의 백성의 수로 풀었다. 정조의 학문은 이처럼 여러 면에서 朱子의 자연철학적 경지를 군왕의 인문적 정치원리에 직접 轉用하는 데 진력하는 특징을 보였던 것이다. 어쩌든 정조의 해석대로라면 만백성은 곧 군주의 분신을 뜻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곧 전형적인 君民一體 사상에 해당한다.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밝힌 「自序」의 정치철학은 두 개의 사상적 기초로 이루어졌다. 즉 하나는 明月로 상징된 「明德」의 구비 문제, 다른 하나는 태극이 분화하는 역과 풀이이다. 전자는 『大學』이 제시한 「明明德」 공부, 후자는 『周易』 공부에 각각 뿌리를 두었다. 정조의 『대학』 공부는 이 책이 담고 있는 사상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에 두어졌다. 할아버지 英祖의 독려에 의해 시작된 그의 『대학』 공부는 이 책의 머리 구절 “明明德”에 집중하였으며,

(28) 이하 「自序」에 대한 서술은 李泰鎮, 「正祖의 『大學』 탐구와 새로운 君主論」, 『李晦齋의 思想과 그 世界』(대동문화연구총서 XI, 대동문화연구원, 성균관대, 1992)에 근거함.

(29) 『朱子語類』 권 94 「理性命」, 中華書局 刊行本, 제6책 2409쪽. 이 구절을 확인하는 데는 일본 東京大學 渡邊 浩 教授의 助言이 있었다.

그 경지는 곧 周나라 文王의 정치세계에 대한 탐구였다.<sup>(30)</sup>

周나라 文王의 정치세계는 『書傳』과 『詩經』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즉 『서전』 泰誓 下에 武王이 先考 文王의 덕을 기리면서 “오호라! 내 아버지 文王께서 日月이 빛을 비침(照臨)과 같이 (그 덕이) 사방에 빛나고 西土(주나라)에는 더욱 두드러졌으니 (그래서) 우리 주나라는 생길 때부터 多方(의 복속)을 받았다”고 하였고, 『詩經』 권6, 大雅 3에 周公이 成王을 훈계하는 詩에 “明明(환 덕)은 아래에 있고, 赫赫(한 命)은 위에 있다”고 읊었다. 후자는 周公이 문왕과 무왕이 天命을 받은 것을 말하면서, 먼저 在下者가 明明한 덕을 갖추면 在上者가 밝디밝은(赫赫한) 命을 내리게 되어, 상하가 서로 만나(達) 去就가 무상하게 되니, 이 때문에 하늘이 (누구에게나) 쉽게 마음을 주지않으며, 아무나 임금이 될 수도 없는 까닭이라는 훈계의 뜻을 담은 것이다. 영조는 『詩經』 大雅 文王篇을 講學할 때 “문왕의 정치는 小民을 감싸주고 보호하는 것”(『영조실록』 권 86, 영조 31년 12월 18일 정사)이라고 해석하여 자신의 정치도 이를 전범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정조도 「자서」에서 “내가 明德에 뜻을 두니 文王이 西土(西周)에 임하”듯이 모든 정사가 잘 풀렸다는 표현을 썼다.<sup>(31)</sup> 두 왕이 『대학』에 특별한 관심을 둔 것은 곧 주나라 문왕의 明德의 세계를 자신의 치세에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西周의 문왕은 주지하듯이 祖先의 遺法을 따르고, 仁政을 행하고, 천하의 賢士를 우대한, 儒敎 세계에서 이상적 군주로 꼽히는 존재의 하나이다. 유교정치에서 堯, 舜, 禹, 湯, 文王은 교과서적으로 꼽히는 聖君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文王을 특별히 주목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왜 영조, 정조가 문왕을 이처럼 주목했는가는 앞으로 깊이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여기서는 앞에서 인용했듯이 영조가 “문왕의 정치는 小民을 감싸주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아래는 조선초기부터 중기까지 小民 보호의식의 변천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30) 이태진, 앞 논문, 1992, 231~240쪽.

(31) 이태진, 앞 논문, 249쪽.

(3-1) 鐘城 도호부사 李伯慶과 殷山 현감 金貴孫 등이 하직하니, 임금의 引見하고 …… 김귀손에게 이르기를, “守令의 임무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중하게 되니, 그대는 나의 마음을 몸받아 小民을 자식처럼 사랑하라.”하였다. (『문종실록』 권 3, 문종 즉위년 8월 22일 계사)

(3-2) 왕이 晝講에 나왔다. 『大學演義』를 강하는데 시독관 洪濬이 아뢰기를, “…… 周 成王이 어려서 즉위하여 농사 짓는 고난을 모르기 때문에 周公이 無逸篇을 지어 훈계삼아 올리면서 농사의 고난과 小民의 원망을 날날이 갖추어 실어 놓았으니, 임금이 구중 궁궐 속에 깊이 앉아 계시어 堂 아래가 천리보다 멀리 있는데 어떻게 閭里의 원정과 농사의 고난을 아실 수 있으리까. 반드시 經筵에 남시어 신하들을 대하셔야 곧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권 11, 연산군 1년 12월 21일 庚午)

(3-3) 夜對에 나아갔다. …… 영준이 아뢰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큼니다. 임금은 깊은 구중 궁궐 속에 있는데, 小民의 어려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반드시 사대부를 인접하여 민간의 질고를 물은 뒤라야 백성이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참찬관 趙元起가 아뢰기를, “그많은 군현에 어떻게 일일이 수령을 가려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감사 한 사람만 가리면 민폐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 (『중종실록』 권 19, 중종 9년 1월 28일, 壬辰)

(3-4) 知敦寧 李宗城이 上書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 戶錢 …… 故 新豐 府院君 文忠公 張維가 이르기를, ‘나라에서는 차라리 小民의 마음을 잃을지언정 士夫의 마음을 잃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長陵(仁祖)의 시대에도 오히려 이러했는데, 하물며 오늘날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이 점이 절대로 시행할 수 없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영조실록』 권 71, 영조 26년 6월 22일 계사)

(3-1)은 왕조 초기의 왕정의 소민 보호의 구현은 주로 守令權의 확립에서 구해졌던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3-2) (3-3)에 의하면, 중기에서는 초기의 중앙집권관료제가 많은 문제점을 일으켜 經筵에 참석하는 「賢臣」과 엄선된 監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었다. 훈척세력의 비리를 비판하는 사림세력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나 사대부 중심의 통치 논리였던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3-4)는 초기 이래의 사대부 중심의 국가관이 영조대까지도 존속했던 것을 보여준다. 그 논리는 나라가 소민의 마음을 잃을지언정 사대부들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숙종대 이후 이런 논리는 국왕들이 사대부보다

소민을 더 중요시 하는 치국관을 제시함으로써 크게 흔들리게 된다. 아래가 그 예문들이다.

(3-5) 傳敎하시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良民을 보전하려면 먼저 臈法을 엄정하게 하라’하였다. 趙씨의 宋나라는 인후함을 숭상하였지만은 오직 臈吏만은 棄市하였다. 우리나라의 장법은 엄하지 못하여 …… 小民들이 곤궁하게 된 것이 괴이할 것이 없다. 이제부터는 職秩의 높고 낮음을 가릴 것 없이 貪臈이 현저한 자는 엄하게 문초하고 끝까지 죄를 조사하여 법을 엄정하게 하기를 기약하라. ……”하였다. (『숙종실록』 권 16, 숙종 11년 2월 5일 을미)

(3-6) 영의정 李光佐가 劄子를 올려 청하기를, …… 批答하시기를, “아! 어제 새벽 이후 만일 黨心을 둔 자가 있다면 이는 역신이니, 趙泰彦을 벌주라는 명을 어찌 그만 두어야 하겠는가? …… 齊 나라 威王이 阿大夫를 烹刑에 처한 고사가 이미 있는데, 날마다 黨習을 일삼고 小民을 돌보지 않으니, 그 죄는 제나라의 아대부보다 심하다. 실로 장차 門(궁궐의 대문; 인용자)에 임하여 백관을 모아 큰 거리에서 팽형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黨人의 고기를 보게 해야 마땅한데, ……”(『영조실록』 권 45, 영조 13년 8월 13일 기사)

(3-7) 右尹 朴權이 良役變通에 대하여 陳疏하기를, “…… 이제 만약 戶口錢이라 이름하여, 모든 가호의 남녀를 물론하고 16세부터 55세까지의 식구를 헤아려 …… 이 법을 시행하면 小民은 모두 기뻐할 것이나 大家·居室로 많은 노비를 거느린 자에서 京鄕의 양반·서얼·중인까지는 갑자기 전에 없던 賦를 당하게 되어 비록 기뻐하지 않은 마음이 있게 되겠지만, 이미 국가의 뜻이 역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돌보려는 것에서 나온 것임을 알면 조금 지식이 있는 자는 반드시 원망하는 데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숙종실록』 권 50, 숙종 37년 12월 27일 신사)

(3-8) 임금이 朝陽樓에 나가서 王世子에게 下諭하기를, “…… 돌아보건대 지금 聖祖의 혈맥은 단지 너와 元孫이 있을 뿐이니 …… 네가 나라를 보존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 世臣은 나라의 元氣이다. …… 너는 모름지기 世臣을 보호하고 소민을 화합하게 하는 것으로써 유념하여 오늘의 일을 잊지 말도록 하라”하였다. 어필로써 御製를 써서 내려 판에 새겨 벽에 걸도록 명하였다.(『영조실록』 권 74, 영조 27년 10월 8일 신축)

위 예문들은 18세기의 군주들의 소민보호 의식이 이전과는 현저하게 달라진 것을 그대로 확인시켜준다. 이전에서는 소민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실정을 제대로 알려줄 관리가 누구냐가 문제였던 것에 반해, 관리들 자체가

소민을 궁핍하게 하는 주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직시하면서 해당 관리들에 대한 징벌을 어떻게 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贓吏(3-5)뿐만 아니라 사대부들의 黨習(3-6)까지도 문제삼고, 민의 질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3-7)을 왕정의 중요한 임무로 인식한 것이 이전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18세기 군주들은 탕평책으로 사대부들의 당습을 없애고 민의 고충 곧 民隱을 해결하는 데 진력하는 것이 곧 왕정의 본무인 小民 보호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이런 왕정관에 동조하는 신하들은 곧 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世臣」으로 간주되어 소민을 화합케 하는 과제와 함께 이들에 대한 배려가 강조되기도 하였다.(3-8) 영조, 정조대의 왕정은 실제로 상언·격쟁의 제도를 발달시켜 民訴를 무제한으로 받아 처리하고, 어사제도를 획기적으로 발달시켜 국왕이 牧民의 일선을 직접 지휘하다시피 하는 체제를 구축해 이전의 왕정과는 현저하게 다른 모습을 갖추었다.<sup>(32)</sup> 바로 이런 추구 속에 영조가 문왕의 정치의 요체를 “小民을 감싸주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문왕에 대한 흠모가 곧 소민 보호의 실현에서 비롯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상의 고찰에 의하면, 정조의 「문왕후천팔괘도」에 대한 관심은 곧 소민 보호 정치의 실현을 뜻한 데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가 「만천명월 주인옹자서」에서 백성들을 군주의 분신으로 간주한 것도 소민보호의 과제에 대한 철저한 인식의 산물이다. 그런 인식 아래 자신이 펼친 정사 자체를 文王이 西周에 임했던 것과 같은 것이라는 비유가 나올 수도 있었던 것이다. 문왕이 이루었던 그 明明한 德治의 세계를 얻고자 영조, 정조는 스스로 「修己」에 진력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明德의 함양으로 밝은 달과 같이 至公至純한 경지에서 정사를 처리하니 문왕의 시대처럼 왕정이 제대로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자서」의 기본 논지이다.

18세기 탕평군주들의 소민보호의식은 民國, 民國事란 새로운 용어를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다음은 그 대표적인 예 몇가지이다.

(4-1) 傳曰, 애석하다! 근일의 헤아려 도모함(籌謀)이 民國事를 크게 소홀히 하

(32) 韓相權, 『朝鮮後期 社會와 訴冤制度』, 일조각, 1996.



였으니 朝廷의 紀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民隱(민의 고충)을 중히 여긴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備邊司謄錄』 181책, 正祖 17년 2월 18일조, 국편 간행본 18책 89쪽 라)

(4-2) 傳曰, 근래 더위로 머리의 부스럼이 아파오지만 民國事는 감히 한가히 될 수가 없다.(앞 책 181책, 正祖 17년 6월 20일조, 국편 간행본 18책 171쪽 라)

(4-3) 教曰 國에 이롭고 民에 이롭다면 살갓(肥膚)이라도 무엇이 아까우리오 先王께서 寡人에게 곡진하게 타이르신 바이다. 國用이 乏絶을 고하고 民産이 다하여, 民國을 말하고 걱정하면서 한밤 중에도 의자에 돌려 앉았다. 宮房田結에 이르러, 法外로 더 받은(加受) 것, 代盡 未收는 國用을 크게 손상할 뿐만 아니라 小民을 크게 해침으로 유사로 하여금 查正하도록 하고 이어 溫嬪 이하 여러 궁방의 田結의 代盡 및 加受한 것들을 모두 戶曹에 속하게 하였다. …… (『正祖實錄』 附錄 行狀; 국사편찬위원회 간행본 『朝鮮王朝實錄』 47책 298쪽)

위 용례들에 의하면, 소민들의 민은 곧 고충을 해결하는 것 자체를 民國, 民國事로 인식한 것이 확인된다. 다음은 民國이란 용어의 뜻풀이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4-4) 噫라. 國은 民으로서 본을 삼는다. 그 때문에 國은 民에 의지하고 民은 國에 의지한다. 古語에 이르기를, 本이 튼튼해야 나라(邦)가 평안하다고 했는데 이는 참으로 王政이 앞세워야 할 바이다. …… (『備邊司謄錄』, 英祖 1년 4월 24일조, 국편 간행본 7책)

(4-5) 民은 國에 의지하고 國은 民에 의지한다. 民이 족하면 君도 족하다.(『正祖實錄』 附錄 行狀; 國史編纂委員會 간행본 47책 295쪽 다)

(4-6) 民은 上에게 의지하고 上께서는 民에 의지하여 둘이 서로 의뢰하여 國體를 이룬다.(崔漢綺, 『明南樓叢書』 仁政 권 20 用人 聽民黜陟)

위 중 (4-4)는 國과 民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초기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영조 스스로 그 연원이 『書傳』의 邦本論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한편 국과 민의 상호 의지관계를 강조함으로써 民이 단순한 被治의 대상이 아니라 나라의 본체로서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어 있다. (4-5)에서는 민과 국의 상호의지 관계를 강조하면서, 國을 곧 君과 동의어로 간주한 점이 주목된다. (4-6)은 민과 上 곧 군주의 상호 의지 관

계를 밝히고 바로 그 양자가 국체를 이룬다고 직접 언급하였다. 이렇게 되면, 종래의 「國家」란 용어가 중시한 왕실과 사대부의 家에서 사대부쪽은 빠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sup>(33)</sup> 이대로라면 과히 혁명적인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고찰에 의하면, 정조의 「문왕후천팔괘도」에 대한 관심은 곧 명실상부한 소민보호의 왕정 곧 民國政治 이념을 세우고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태극사괘의 국기가 바로 그 「문왕후천팔괘도」에 근거해 나온 것이라면 거기에도 당연히 그 이념이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

### 5. 高宗時代의 民國 이념과 국기의 標章

정조대에 정립된 민국이념은 한 시대의 풍미로 끝나지 않았다. 純祖는 “文王은 純一 不雜하여 民을 보기를 赤子같이 하였듯이”(『純齋稿』 권4, 說, 視民如傷說) 군왕이 백성들을 赤子(간난 아이)처럼 보살필 때 “억조 백성들이 모두 추대하여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따르듯이 할 것이다”(『순조실록』 권 13, 순조 10년 9월 28일 庚辰)라는 요지로 선왕들의 민국론을 繼述하였다. 이는 丁若鏞의 「湯論」 「原牧」의 추대군주론을 연상케 하는 면이 있어 주목된다.<sup>(34)</sup> 그리고 앞에 인용한, 군주와 민이 서로 국체를 이룬다는 崔漢綺의 國體 규정 또한 19세기의 민국론의 傳存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

(33) 국가란 용어가 이후 전혀 쓰이지 않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정의 상용어로는 민국이 더 선호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적인 용어로서의 國家와 民國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가지고자 한다.

(34) 「탕론」은 아래서 위로의 선거제적 방식을 제시하여 세습군주제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제시했지만, “무릇 천자는 다중이 추대해서 이루어지니 또한 다중이 밀어주지 않으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여 (임형택, 「茶山の ‘民’ 주체 정치사상의 이론적·현실적 근거」,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下) (이우성 정년 퇴직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0, 253쪽) 순조의 군주관과 근사한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원목」의 요지가 전제군주 하에서 인민이 오직 통치자를 위해 존재하는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궁극에 牧이 민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던가(임형택, 256쪽) “천하에 지극히 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자 小民이지만 천하에 산처럼 높은 자 역시 小民이다”라는 다산의 말은(앞 논문, 266쪽) 탕평군주들의 小民觀과 거의 유사하다.

나 세도가문들의 발호로 왕이나 지각있는 지식인들의 이런 뜻이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18세기 후반과 다른 점이었다. 관료제도를 악용한 세도정치가 上意下達, 下意上達의 소통을 차단함으로써 民亂이 일어난 것이 19세기 특유의 상황이었다. 大院君 정권을 통해 그런 시대적 역행이 제거된 다음, 친정에 나선 高宗은 선대왕들의 民國 정치 이념 실현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였다. 고종 재위 중 民國, 民國事란 용어가 君臣 간에 거의 상용되다시피 한 것이 그 증거이다. 각 시기별 대표적인 예들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5-1) 우의정 朴珪壽曰, 錢과 物은 輕重 貴賤이 반드시 公平함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만 民國의 害가 되지 않는다. 淸錢의 폐단은 근일에 극심했는데 대개 여기에 원인이 있었다. ……(『高宗實錄』 권 11, 고종 11년 정월 13일조, 439쪽)

(5-2) 우의정 閔奎鎬에게 諭示하였다. “…… 지금 民國事計를 돌아보니 원의 둘레가 터질 듯이 위험한 것, 물이 새는 배가 물 가운데 있는 것 등과 같으니, 將伯의 도움과 副手의 책임을 卿이 아니고 누가 맡을 것인가? ……” (『高宗實錄』 권 15, 고종 15년 10월 5일조, 국편간행본 상권, 582쪽)

(5-3) 지금 정부의 山林과 縣會의 좌수는 모두 儒敎에서 비롯하였으니 民望에 따라 선발하여 民國事를 협의하면 本朝도 역시 君民 共治의 풍이 있게 될 것이다. (朴泳孝上疏文, 『日本外交文書』 제21권 明治 21년 1888년 1월-12월)

(5-4) 3품 李寅根의 상소의 대략. 民國 大政은 백성을 편하게 하고자 하나 편치 않은 것, 나라에 이롭게 하고자 하나 이롭지 않은 것을 가리켜 굽히지 않는 것이니 이에 감히 條陳합니다. …… 下臣이 이 章을 정부에 대해 편의 稟處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참으로 民國을 위해 큰 다행입니다.(『고종실록』 권 34, 建陽 원년 12월 30일조, 국편간행본 중권, 611쪽)

(5-5) 중추원 1등 議官 尹致昊 등의 상소의 대략. 신들이 모두 거칠고 소홀한데도 다행히 聖明에 접하여 충애의 정성을 가지고 독립의 회를 설하여 황실을 보호하며 국권을 유지하기를 기도함이 여러 날이 되었는데 지난 달 25일에 내리신 조칙을 엮드려 읽고 …… 셋째도 輔相이 宗社 安危에는 조금도 우려하지 않고 다만 사사로이 봉록만 흠모하며 …… 하찮은 무리가 어찌 때를 타서 나아감을 도모하여 아침하여 즐겁게 해주는 풍습으로써 총명을 가리며 民國을 해치지 아니하오릿가? …… (『고종실록』 권 37, 光武 2년 7월 7일조, 국편간행본 하권 46~47쪽)

위에서 보듯이 민국, 민국사란 용어는 고종 친정 초기부터 대한제국이 출범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굳은 어느 쪽에서나 모두 국가와 국가사의 뜻으로 상용했다. 그렇다면 정조대왕에 의해 체계화 된 「문왕후천팔괘도」에 대한 인식 또한 마찬가지로 전승되었을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親政에 나선 高宗은 실제로 왕정의 모범을 특별히 正祖에게서 구하여 정조 왕정의 중심을 이룬 奎章閣의 비중을 높이고 규장각 도서에 대한 정리사업도 벌였을뿐더러 경복궁 화재로 일시 창덕궁에 옮겨가 있을 때는 규장각 본관인 주합루 일대에서 집무하기도 했다.<sup>(35)</sup> 그후 乾天宮을 지어 경복궁으로 돌아왔을 때는 集玉齋란 집무실 겸 서재를 두고 이곳에 중국 上海로부터 서양 제도 문물을 소개하는 서적들을 포함해 중국의 신서적 4만여 권을 구입하여 정책 수립의 자료로 삼았다.<sup>(36)</sup> 재위 23년(1886)에 私奴婢의 世役을 금지한 것도 정조가 말년에 소민보호의 차원에서 계획한 공사노비의 전면 철폐의 뜻을 계승한 것이었다.<sup>(37)</sup> 고종의 정조에 대한 이와같은 흥미와 기술 의지로 볼 때, 국가의 상징으로서 국기가 필요해진 시점에서 선왕 정조가 논한 「만천명월주인옹자서」의 君民一體論을 도형화 하여 이를 국기로 삼고자 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더욱이 정조의 학습용으로 만들어진 『啓蒙圖說』 같은 책이 국왕의 서재에 비치되어 있었다면 더욱 그렇다.(주 27)

御旗의 태극팔괘도는 실은 「문왕후천팔괘도」를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다. 팔괘도만 따고 중앙의 태극 변화도는 전혀 독창적인 것이다. 어기의 태극 변화도는 周敦頤의 「태극도설」이나 李滉의 「聖學十圖」 중의 태극도(그림 자료 5)의 그것과도 다르다. 주엽계, 이퇴계의 것은 태극이 “동자없는 눈”의 형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어기」의 태극 부분은 음양으로 양분되어 있다. 태극의 가운데가 이렇게 양분된 것은 유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대변화를 가져올 만한 것으로는 정조의 「自序」의 군민일체 사상 외에 달리 있기 어렵다. 그는 명월은 태극이요 태극은 군주인 나라고

(35) 연갑수, 「高宗 초중기(1864-1894) 정치변동과 奎章閣」, 『奎章閣』 17. 주합루 옆 書齋閣 실내에는 지금도 「萬川明月主人翁自序」를 새긴 현판 하나가 걸려있다.

(36) 이태진, 「奎章閣 中國本 圖書와 集玉齋 도서」, 『民族文化論叢』 16,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6.

(37) 『高宗實錄』 권 23, 고종 23년 1월 2일. 『日省錄』 고종 23년 3월 11일조.

하고 그 태극이 분화하여 나온 1,677만여 畵을 나의 백성의 수라고 하였다. 「이기」의 태극변화도가 태극을 쪼갠 것은 곧 군주의 몸이 나뉘어 백성이 되는 것을 형상화 한 것이었다. 요컨대 高宗은 국기 제작이 절실히 요청된 마당에서 「문왕후천팔괘도」에 정조의 「자서」의 군민일체사상을 결합시켜 태극팔괘도를 그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도안은 국왕이 직접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고종이 1884년에 銀貨 도안을 직접 한 사실이 그 가능성을 말해준다. 1884년 3월 6일에 尹致昊가 왕을 입시하였을 때 왕은 친히 붓을 잡고 銀貨의 圖本을 그렸다고 한다(그림 자료 6).<sup>(3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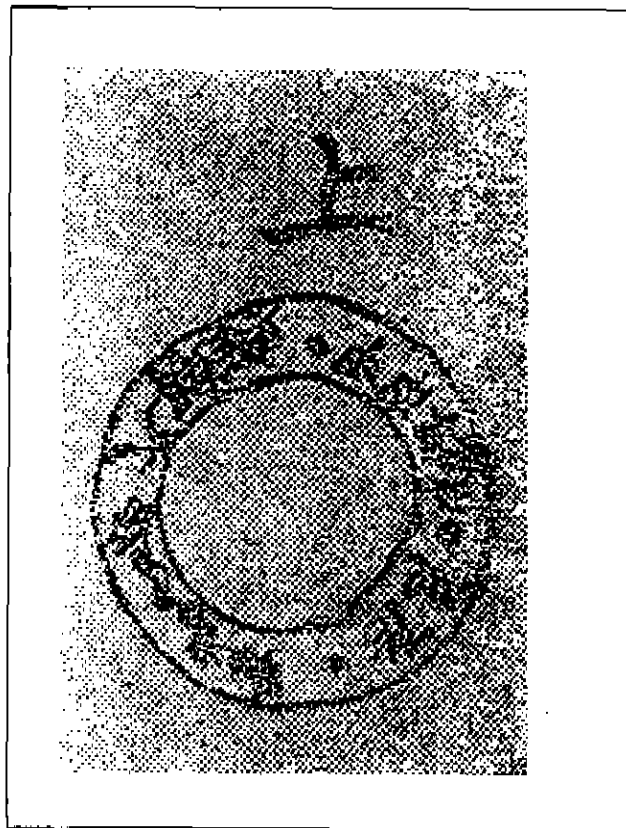


그림 자료 6. 高宗 親筆의 銀貨 圖本, 1884년

君主旗로서의 「이기」의 도형은 한국 최초의 우표로 알려지는 1884년 발행의 이른바 文位 우표(그림 자료 7-1)에 직접 사용되었다. 이 우표는 어기의 태극변화도를 가운데에 집어넣었다. 그런데 『仁川府史』(880~881쪽)에 의하면, 오스트리아 영사를 지낸 적이 있고 1884년 당시 조선 海關에 고용

(38) 陳鎰洪, 『舊韓國時代の 郵票와 郵政』(景文閣, 1964) 73쪽. 이 도안에도 大朝鮮이란 국호를 사용했다.

된 하아스가 조선정부의 용건으로 上海 品川 총영사에게 다음과 같은 문의를 하였다고 한다. 즉 우표 도안 하나(그림 자료 7-2)를 제시하고 이를 일본에서 제작할 수 있는지, 그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왔다고 한다.<sup>(39)</sup> 이 우표도형은 끝내 미발행이 되고 말았지만, 태극4괘기를 중심으로 도안됐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1884년 당시 조선정부는 국기로 정해진 태극사괘기와 군주기로 낙착된 태극팔괘기를 각각 50분짜리와 5문짜리 두가지 우표의 도형으로 삼을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이런 계획은 신문물 수용을 적극화하던 당시의 정부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sup>(40)</sup>

1883년 3월 18일(음력 2월 10일) 간행의 중국 『通商條約章程成案彙編』의 「各國傳意音旗圖說附各國商船旗式」에 의하면, 제임스 선장이 말했듯이 서방 국가들 가운데 군주기가 따로 있는 나라들은 대개 民旗 또는 官民旗를 가지고 있다(그림 자료 8). 이를 참작하더라도 태극팔괘기와 태극사괘기의 관계는 군주기와 民旗(또는 官民旗)의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 1884년 두가지 우표의 도안은 바로 이런 整合 관계를 반영하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해도 좋을 듯 하다.

태극사괘기의 모본이면서 군주기로 낙착된 태극팔괘기는 우주 자연의 조화의 원리를 인사 곧 왕정에 적용하는 뜻을 바탕으로 小民 보호 정치의식의 극대화로서 군민일체 사상을 형상화 한 것이었다. 그 형상화에서 태극까지 양분한 것은 유교 역사상 전례가 없던 것으로서, 이는 백성이 곧 군주의 분신이란 의미를 담은 것이었다. 이런 의식은 비록 위로부터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면서도 피치의 대상이었던 과거의 관념에서 벗어나 군주와 함께 나라의 주인이란 의식을 확고하게 표명한

(39) 위와 같음.

(40) 태극기 선양회는 광복50주년 특별전시회 『대한민국태극기 변천사전』(1995. 8. 4 ~ 20 전시) 도록에서 당초의 우표 도안은 태극4괘기였는데 일본 인쇄국이 고의적으로 이를 중국 태극도형으로 대체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기」 태극도를 주돈이의 태극도를 모방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배척하는 입장에서 나온 오해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仁川府史』 간행시(1933년) 일본인 편찬 관련자들은 미발행으로 끝난 50分 짜리 우표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이의 주문 관련 자료를 남긴 듯 하나, 본래는 「어기」의 태극도를 넣은 5文짜리와 50분짜리를 함께 발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것이였다. 이 의식은 당초의 국기안(태극팔괘기)에 대해 군주기와 민기로의 나눔이 권장되고 또 민기를 일차적인 국가 상징으로 삼아야 한다는 자문에 부닥쳤어도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곧 고종대의 정치의식이 선대왕의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1883년 1월에 공표된 국기의 형태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1883년 3월에 나온 청국의 『通商條約章程成案彙編』의 「各國傳意音旗圖說附各國商船旗式」에 수록된 「高麗國旗」(그림 자료 9)에 대한 평가 문제이다. 이 국기에 대해서는 김원모가 1998년 1월 18일에 자신이 최초로 발견한 것이라고 하여 그 그림이 도하 신문에도 소개되었다. 그는 이 국기가 황색 바탕에 4괘의 색깔이 청색인 점을 주목해 이것이 곧 1883년 1월 공표 당시의 본래의 국기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41)</sup> 그런데 이 태극기 그림은 청국이 조선에 대해 한창 속국인 것을 강조하던 시기에 나온 것이므로 청국측의 왜곡이 가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1883년 간행의 위 『通商條約章程成案彙編』에 실린 태극기는 분명히 「大清國屬 高麗國旗」란 제목이 붙어 있다. 한편 같은 내용의 책이 1898년에 『通商約章類纂』이란 이름으로 재간행되었을 때는 그냥 「高麗國旗」라고 하였다. 앞의 『時事新報』의 보도나 조미수호통상조약시의 분위기로 보아 조선측이 국기 제작을 통해 기도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국의 긴박으로부터의 이탈이였다. 반대로 청측은 조선의 그러한 의도를 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였다. 그런 가운데 청측이 1883년 1월 27일(음력) 조선측으로부터 새로 정한 국기의 내용을 통보 받았을 때 이를 왜곡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彙編』이 수록한 조선 국기를 「大清國屬 高麗國旗」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것을 입증한다. 나아가 이 그림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태극도형이 적색, 청색의 음양 속에 백색 원형의 태극을 그대로 남겨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태극을 반으로 나눈 조선 국기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태극이 쪼개지지 않은 상태를 표현한 이런 태극음양도는 중국에서 계속 내려오던 것으로 『彙編』은 조선의 새 도안

(41) 김원모, 앞 「태극기의 연혁」

을 외면하고 굳이 중국의 전통적인 태극도를 집어넣었던 것이다. 쉽게 말하면 청색은 태극도형까지 자기네 것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다. 그리고 황색 바탕에 4괘의 색깔을 청색으로 한 것도 문제가 있다. 황색은 중앙색이자 중국 천자의 색깔, 청색은 동방의 색이므로, 이 두 색깔을 중심으로 한 색 배합은 결국 중국 천자의 속국으로서의 동쪽 나라라는 의미를 부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당시 청측이 추구한 속방정책(고려 속국주의)에 그대로 합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태극기의 원형으로 간주하는 판단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될 위험성이 있다.

## 6. 대한제국의 國旗 및 君主旗 선양

1896년 2월 「아관파천」으로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는 데 성공한 高宗은 임오군란 이후 계속 뒤흔들려온 독립국가로서의 기초를 재확립하기 위해 이듬해 1897년에 국호도 大韓으로 바꾸고 국체도 제국으로 전환하였다. 국호 조선은 중국이 준 것이므로 더 이상 가질 것이 못된다는 취지아래 조선이란 호칭에 못지않게 역사적으로 많이 사용된 韓을 택하여 대한제국이라고 하였다.<sup>(42)</sup> 한편, 1883년에 제정된 국기는 신제국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국기는 제정과정에서 이미 청국의 개입을 배제하여 자주독립성을 고양한 그 자체의 자랑스런 역사가 있을뿐더러, 그 標章이 또한 선대왕들의 뜻을 繼述하면서 근대지향적 이념을 담은 것이었기 때문에 신국가의 이념에도 부족할 것이 없었다. 「아관파천」 후 대한제국으로의 출범을 준비하던 시기인 建陽 원년(1896) 9월 22일자 『독립신문』의 논설은 국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42) 『고종실록』 권 36, 광무 원년(1897) 10월 11일조. 국호에 대한 논의는 이날 환구단 제사를 앞두고 국왕이 제안한 것으로, 대한이란 새 국호도 국왕이 직접 다음과 같이 제시한 것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삼한의 땅으로서 나라의 초기에 하늘의 지시를 받고 한 개의 나라로 통합되었다. 지금 나라의 이름을 「대한」이라고 한다고 해서 안될 것이 없고 또한 매번 일찍이 보건대 여러나라의 문헌에는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한」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전에 이미 「한」으로 될 징표가 있어 가지고 오늘이 있기를 기다린 것이니 세상에 공포하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모두 「대한」이라는 이름을 알 것이다 라고 하였다.”



(6-1) 조선사람들은 국기가 엇더한 것신줄 모르는 고로 국기를 보고 공경하고 사랑할 마음이 없거니와 국기라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몸뚱은 물건이라 그러한즉 국기가 곧 임군이요 부모요 형제요 처자요 전국 인민이라 엇지 소중하고 공경할 물건이 아니리오.

이 논설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국기 그 자체를 임군이요 부모요 형제요 처자요, 전국 인민이라고 지적한 점이다. 이것은 국기의 상징성을 강조한 말이지만, 태극기가 곧 君民一體의 사상을 담은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논구와도 크게 어긋나지 않은 표현이다. 같은 신문의 8월 20일자 雜報에 실린 정동 배제학당 학원 문경호가 지었다는 아래의 「자주 독립가」는 군주기가 이때도 국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고 있었던 사실을 전해 준다.

(6-2)

우리나라 독립되니 팔괘기가 기운나네  
 초홀시고 초홀시고 독립문이 초홀시고  
 사람마다 널리 배워 우리나라 힘써보세  
 ……

남너노소 성벽내여 나라도울 궁리하세  
 합심하고 힘을 써서 독립국을 힘써보세  
 향복무강하옵소서 남산같이 만만세  
팔괘기를 높이 다니 세계상에 제일일세  
 독립문에 맹세하여 우리나라 힘써보세  
 ……

바라고 원하기는 어른 아이 일심으로  
 대군주의 은과 덕이 천지에 가득하니

이 밖에 사진자료로 같은 해 11월 독립협회가 발족하여 독립문 기공식을 할 때 무려 18개의 대형 국기가 동원된 광경도 당시 국기를 통해 자주독립 의식을 고양하던 열기를 느끼게 한다. 그리고 1897년 11월 明成皇后 국장 때 행렬의 한 부분을 이룬 시위대 기마병이 태극사괘기를 들고 이를 「大隊旗」라고 이름붙인 것은(그림 자료 10) 이 기가 君主旗에 대한 官民旗로 인식되었던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대한제국 정부가 국기를 공식적으로 제시한 그림 자료로는 장서각 소장

의 『各國旗圖』(장서각 3-544 사본, 광무-융희연간 1책 9장, 선장 양지)의 첫장에 실린 「大韓帝國國旗萬萬歲(대한제국기만만세)」(그림 자료 12)가 주목된다. 국기의 지면을 정사각형으로 잡아 태극과 사괘를 정연하게 배치한 것이 표준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느끼게 한다. 단지 이 책은 편찬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흠이다. 그러나 41개국의 66개기를 채색으로 정밀하게 그려 소개한 것은 당시 정부 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군주기에 관해서는 광무 6년(1902) 8월 18일(『고종실록』 권 42)에 “御旗 睿旗 親王旗를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데 일이 지중하므로 처소를 별설하여 궁내부 의정부 원수부로 하여금 그 일을 감독(董)하게 하고, 이에 국가 典常을 상고하고 각국 규식을 參互하여 제도를 稟定하고 軍旗도 함께 거행하라”는 조치가 내려졌다.<sup>(43)</sup> 이 조치는 여기 곧 군주기 외에 황태자기(睿旗) 왕자기(親王旗)까지 갖추기 위한 것으로 여기 자체에 어떤 변동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끝으로 대한제국의 황제정이 국기를 통해 고양하고자 한 것이 君民一體의 민국이념 그것뿐이었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독립협회와 황제간에 오간 다음의 두가지 대화가 참고된다.

(6-3) 충추원 1등의관 안경수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신등이 생각건대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自立하여 타국에 의뢰하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스스로 닦아서 政法을 온 나라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는 하늘이 우리 폐하의 一大權으로 준 것입니다. 이 권한이 없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독립의 문을 세우고 독립의 회를 설치하여 위로는 皇上的 지위를 받들고 아래로는 인민의 뜻을 공고히 하여 억만년 무궁한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그런데 근일의 국세를 보전대 …… 삼천리 1천5백만 인구는 모두 우리 대황제폐하의 赤子이며, 황실을 보호하고 국권을 유지하는 것은 이 적자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強隣을 밖에서 侮逼하게 하여 聖上的 몸이 위에서 외롭고 위태롭게 한 것은 단지 신들이 한오리의 작은 실과 같은 것만을 알고 전국의 큰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구차스레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고치지 못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이에 이르고 보니 첫째도 신들의 죄이고 둘째도 신들의 죄

(43) 『고종실록』 권 42, 光武 6년(1902) 8월 18일조. 의정부 의정 尹容善을 旗章造成所監董大臣으로, 원수부 의장 閔泳煥, 궁내부 서리대신 尹定求를 監董堂上으로 발령하였다.

입니다. …… 삼가 바라전대 폐하는 마음을 확고히 가지고 삼천리 1천 5백만의 적자의 마음을 마음으로 삼아 그 분노를 함께 하고 그 근심을 한가지로 하여 안으로 定章을 실천하고 밖으로 타국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우리 皇上의 權을 세우고 스스로 우리 一國의 권리를 세운즉 十百의 강적이 있더라도 누가 감히 함부로 간여하겠습니까. …… (『고종실록』 권 37, 광무 2년 2월 22일, 하권, 33쪽)

(6-4) 仁化門 바깥에 임어하시어 각국의 공사 영사를 소견하였다. 이어 민인들에게 洞諭하시고 독립협회에 諭하셨다. 칙어는 다음과 같았다. 너희들 모두 나의 말을 들을 것이다. 전후하여 내린 지시에 대해서 너희들은 대부분 다르지 않고 밤새도록 대궐문에서 부르짖었으며 ……어찌 500년 전제의 나라에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겠는가. …… 그러나 짐이 임어한 이후로 정사가 뜻대로 되지 않아 점차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오직 너희 赤子の 죄는 나 한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바로 크게 깨닫고 나는 매우 부끄러워 한다. …… 새벽 이전까지의 일에 대해서는 죄가 있건 죄가 없건간에 경중을 헤아리지 않고 일체 용서해주며 미심스럽게 여기던 것을 환히 풀어주어 모두 다같이 새롭게 나갈 것이다. 아, 임금(后)은 民이 아니면 무엇에 의지하고, 민은 임금이 아니면 무엇을 떠받들 것인가. 이제부터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명분을 침범하는 문제는 일체 철저히 없애버릴 것이다. 이와같이 타 이른 후에 깨닫지 못하고 독립의 기초를 공고치 못하게 하고 전제정치에 墮損한 바 있게 하면 결코 너희들의 忠愛의 素志가 아니다. 나라의 법은 엄격하여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각각 공경스럽게 지켜 날로 開明으로 나아갈 것이다. 짐은 食言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신중히 생각하라. …… (『고종실록』 권 38, 광무 2년 11월 26일, 하권 73쪽)

위 인용문들은, 대한제국에서도 1천5백만의 인구가 황제의 赤子라고 표현하는 등 국민일체의 민국이념의 용어와 논법이 그대로 존속한 것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에 못지 않게 타국에 의지하지 않는 독립국으로서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문제가 거듭 강조되었다. 두가지는 사실은 서로 별개가 아니라 황제와 赤子の 결속만이 대외적인 독립을 보장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자세는 1880년대 이래의 외세 압박의 경험 속에 얻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러한 대외적 각성이 반드시 내적인 문제로 민의 권리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점이다. 위의 (6-4)의 조치가 나오기 전, 10월 20일에 내린 황제의 조칙은 民權의 신장에 대

해서도 깊은 배려를 가한 점이 특색으로 확인된다. 이 조치는 외국에 協會와 國會가 있는 것을 소개하면서, 만민공동회의 소요를 일으킨 지금의 독립 협회는 공동으로 講談하는 私設의 협회에 해당하는 것이면서도 公立의 국회도 잘 하지 않는 政令 평론과 관리의 黜陟 요구를 함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협회의 이같은 지나친 행동은 자주독립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것이므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통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 조치를 내리면서도 협회들이 각기 제 장소에서 모여 토론하는 것은 금지하지 말고 민의 지식 발달의 효과를 가지도록 하라고 지시한 점이다.<sup>(44)</sup> 이것은 대한제국의 황제정이 民權을 억압한 것이 아니라 民志의 발달이 皇帝權의 강화에도 절대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이 점은 멀리 18세기 탕평군주들에 의해 정립된 民國 정치이념이 서양의 근대적 정치 사상과 정치 제도에 접해 얼마든지 발전해 갈수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7. 맺 음 말

이상의 고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기 標章의 사상적 기반이 된 것은 18세기 탕평군주(숙종, 영조, 정조)들이 小民 보호의 정치를 추구하면서 정립한 民國 정치이념으로, 그 이념은 종래의 군주와 사대부 중심의 國家觀을 군주와 백성 중심의 것으로 바꾸는 근대 지향적인 것이었다.

2) 대표적 탕평군주인 正祖大王은 小民 보호에 모범을 보인 周나라 文王의 정치세계를 탐구하면서 「文王後天八卦圖」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는 한편, 진정하게 소민을 보호하는 군주와 백성의 관계는 곧 明月이 수많은 하천(萬川)에 비치는 것과 같은 것이란 설명을 얻었다. 재위 21년에 지은 「만천명월주인용자서」란 글을 통해 확립된 이 정치사상은 태극인 군주의 분신이 곧 백성이란 명제를 얻기까지 한 것으로, 태극기의 태극이 중국의

(44) 『고종실록』 권 38, 광무 2년 10월 20일, 하권, 62쪽.

태극도가 음양 분화 속에 태극이 남아 있는 형태로 그려진 것과 달리 음양으로 나뉜 형태로 그려진 것은 바로 이 군민일체론적 태극 분화론에 연유하는 것이었다.

3) 국기 제정의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즉 국기 제정의 필요성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때부터였으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시점은 1880년 12월 통리기무아문을 설립하고 1881년 윤 7월 다른 나라와의 국교 수립에서 국호를 大朝鮮으로 칭하고 군주의 칭호도 大君主로 사용하도록 조치한 무렵이었다. 새로운 국제질서에의 편입을 위한 준비를 이렇게 갖추면서 이에 필요한 국기의 도안에 대한 검토도 구체화 되어 1882년 5월 한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때는 태극팔괘도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4) 1882년 제3차로 日本에 修信使를 파견할 때 왕은 태극팔괘기를 국기로 사용할 것을 명령하였다. 박영효 등 수신사 일행은 일본으로 가는 明治丸 船上에서 영국인 선장 제임스에게 소지한 태극팔괘기를 보인 결과, 그것이 국기로서는 너무 복잡하므로 팔괘를 4괘로 간략화한 것을 국기로 하고 태극팔괘기는 君主旗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다. 수신사 일행은 팔괘 중 정4방에 해당하는 괘(兌, 震, 離, 艮)를 취한 태극4괘기를 만들어 고베 숙소에서 처음으로 국기로 사용하면서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였다. 보고에 접한 조정은 태극사괘기를 받아들이면서 4괘는 정조의 「先天變爲後天圖」의 중심축의 4괘로 수정하여 1883년 1월의 국기 제정 공포 때 乾離坎坤의 4괘를 그린 태극기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5) 제임스 선장의 자문 시 본래의 태극팔괘기는 바탕색만 바꾸어 군주기로 삼기로 하였다. 당시 서구 여러 나라에서도 군주기와 민기는 병용되고 있다는 자문에 따른 것이었다. 태극사괘기는 곧 民旗 또는 官民旗로 만들어진 것으로 민기가 국가의 제일차적 상징물이 되었다는 것은 18세기 후반에 民國 정치이념이 체계화 될 때보다도 정치의식이 근대적으로 더 진보한 것이었다. 이때 군주기로 낙착된 태극팔괘기의 도안은 「御旗」란 이름이 붙여진 그림으로 현재 奎章閣 도서 속에 전해지고 있다.

6) 1883년 1월에 제정된 국기와 어기는 1897년에 출범한 대한제국에서도

그대로 전승되었다. 편찬처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各國旗圖』 첫 장에 실린 「대한제국기만만세」圖는 제국에서 국기의 定型을 세운 것을 보여주며, 제국으로의 출범에 앞서 독립협회의 구성과 독립문 건립 등에서 대외적 자주 독립의식을 고양하는 데 국기가 본격적으로 활용되었다. 대한제국의 황제정은 일차적으로 대외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君民의 결속을 강조하면서 민국 이념을 전개시키고 국기와 어기를 이에 적극 활용하였다. 대한제국의 이러한 민국 정치이념은 당시 서구문명 수용에서 몇걸음 앞서가던 일본의 그것에 비해서도 큰 손색이 없는 것이었다. 明治 천황국가는 천황을 아버지, 백성을 아들로 보는 ‘가족적 국가관’에 입각하고 있었던 것으로,<sup>(45)</sup> 이는 民에 대한 인식이 민국이념에 비해 훨씬 단순화된 수준의 것이란 느낌을 준다.

본고의 고찰은 대개 이상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논고를 진행하면서 미비점도 많이 남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국기는 국가 상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정과정이나 의미에 대한 고찰은 신중을 거듭해야 할 문제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필자 나름으로 신중을 거듭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느낀다. 그리고 民國 이념의 전개를 추적하면서도 군주의 입장에서 나온 民에 대한 인식은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파악되었지만, 國에 대한 民의 의무를 비롯한 근대적 국민관의 생성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를 남겼다. 이에 대해서는 서양 정치사상 수용의 구체적 면모로서 기회를 달리해 검토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끝으로 다시 국기 문제로 돌아가 현재의 국기(태극기)에 대한 정부의 공시는 1949년 10월 15일자 문교부 고시 제2호뿐인데, 이 고시는 태극기의 표장에 관한 것만을 밝히고,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은 전혀 붙이지 않은 점을 지적해 둔다. 국기의 의미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설명이 이처럼 빠져 있는 상태에서 우주 자연의 원리를 표시한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화 되어 있다. 이것은 복희씨의 선천역, 선천팔괘도에 근거하는 인식이다. 그러나 본고의 고찰에 의하면 국기의 모본이 된 「태극팔괘기」는 선천역의 원리를 인사에

(45) 石田雄, 「이대올로기로서의 天皇帝」, 차기벽·박충석 편, 『日本現代史의 構造』 (한길사, 1980) 112~113쪽.

적용하는 주나라 문왕의 후천역, 후천팔괘도에 근거한 것이었다. 한 나라의 국기라면 자연원리보다 정치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에서 의미를 구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므로 이 연구 결과가 태극기의 의미를 새로 정립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태극기의 태극문을 우리 고유의 것에서 찾고자 하여 멀리 통일신라시대의 조각품에 나타난 태극문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역사적 견지에서 볼 때 태극기의 유래와 의미는 근접된 시기의 정치사상에서 구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태극문양은 시공간적으로 넓게 퍼져 있고 그 의미도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나친 연원 확대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

(필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





御  
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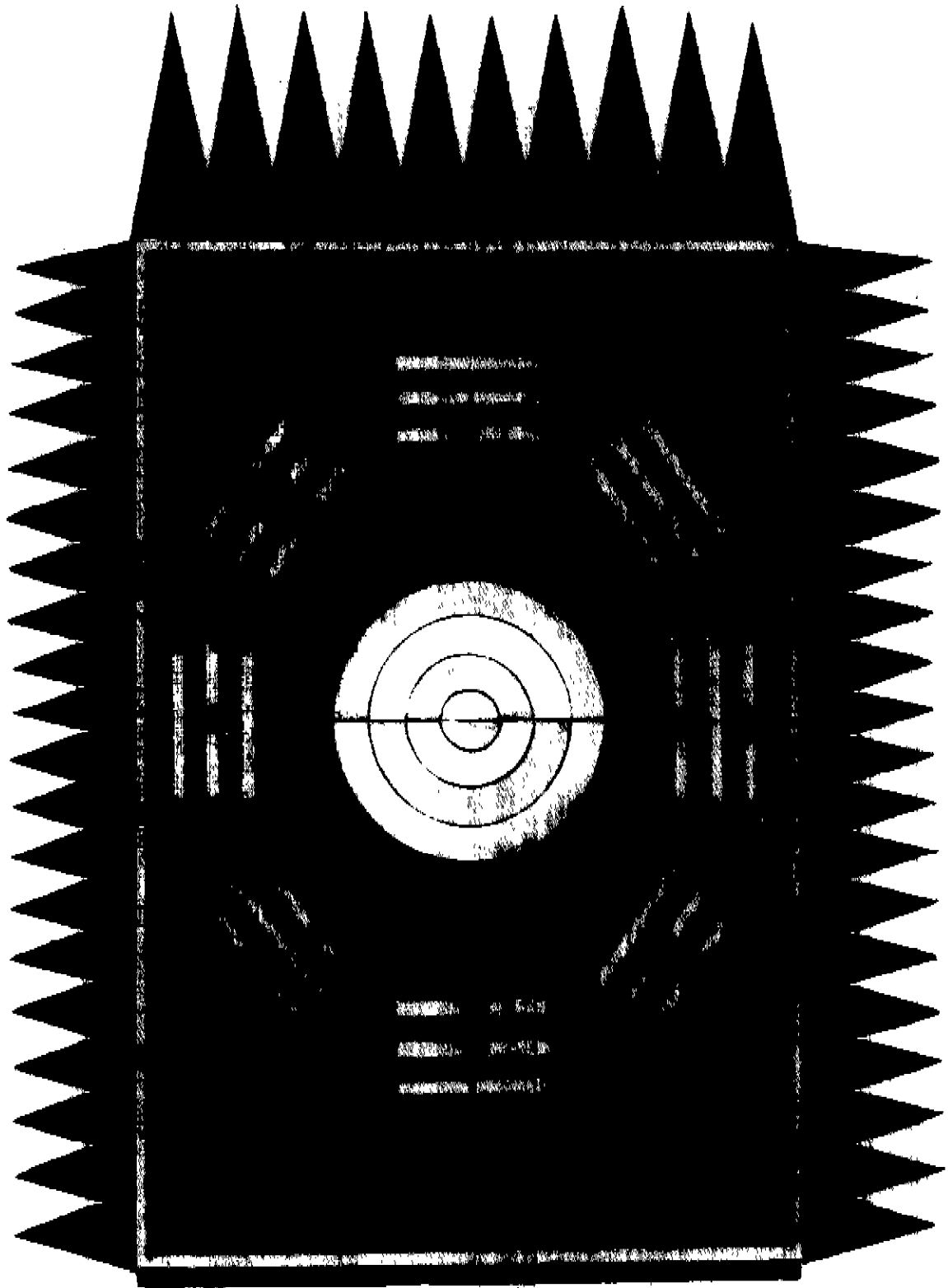


그림 자료 1. 奎章閣 소장의 御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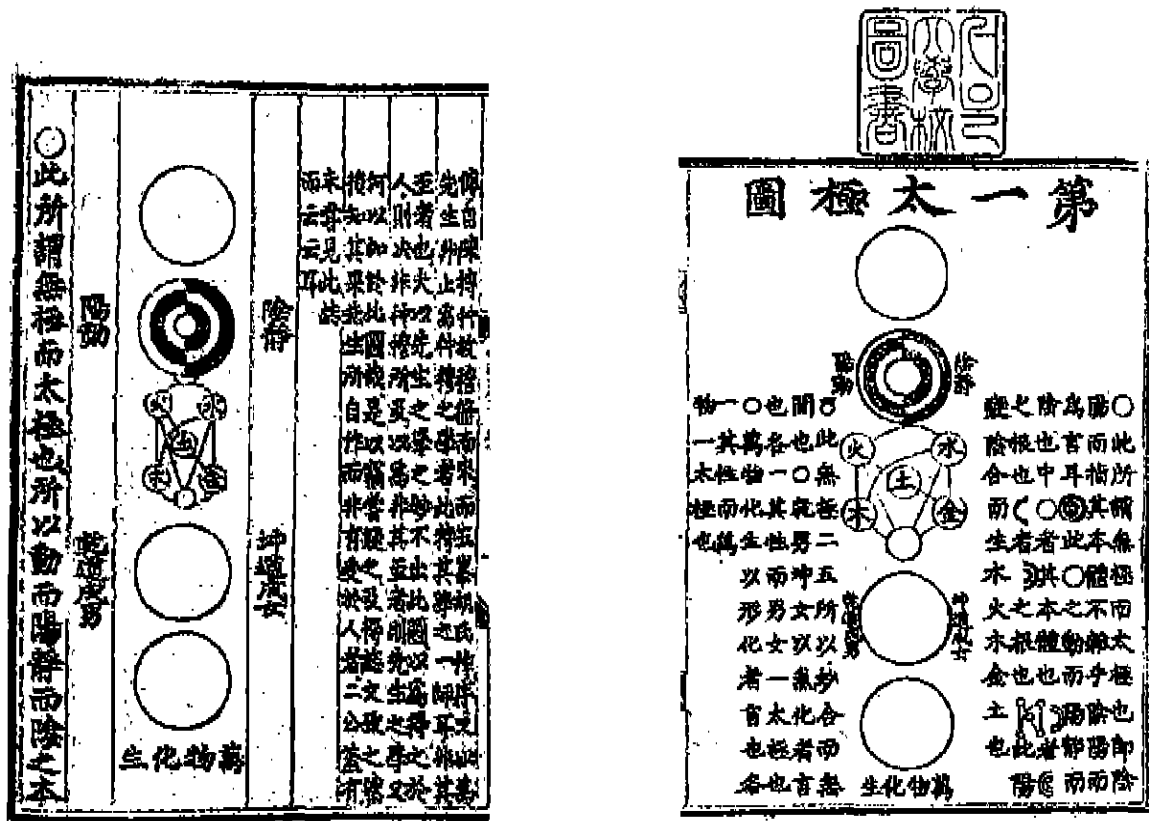


그림 자료 5. 宋 周敦頤의 太極圖說과 조선 李滉의 太極圖



그림 자료 7-1. 1884년 발행의 5文 짜리 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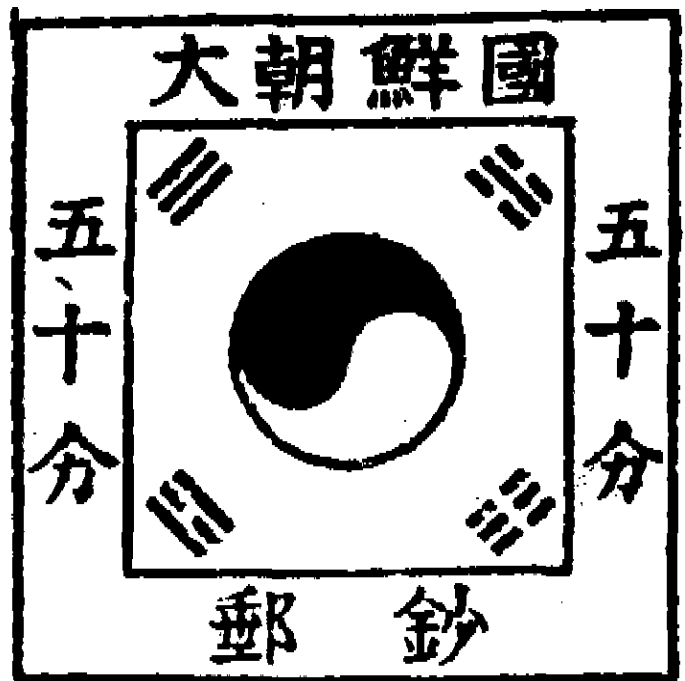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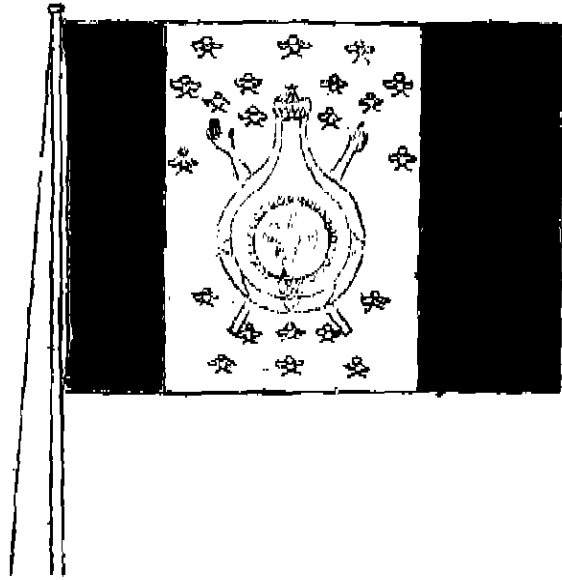


그림 자료 7-2. 50分 짜리 우표 도안 (1884년)

旗皇國法



旗民官國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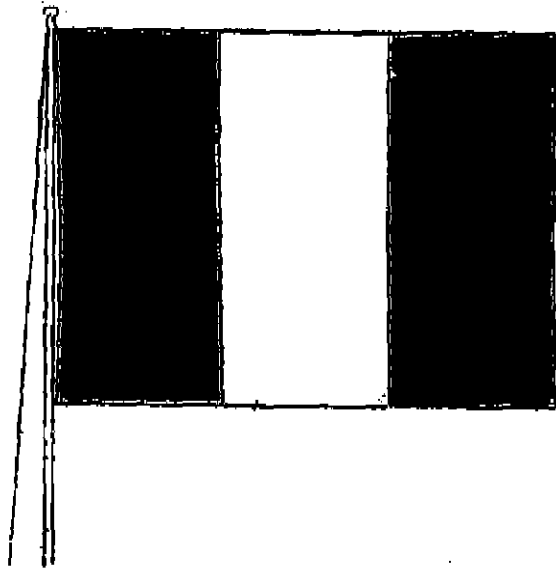


그림 자료 8. 『通商條約章程成案彙編』(1883년)에 실린 프랑스 皇旗와 官民旗

屬國清大

旗國麗高



그림 자료 9. 『通商條約章程成案彙編』에 실린 「大清屬國 高麗國旗」



그림 자료 10. 『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에 실린 「大隊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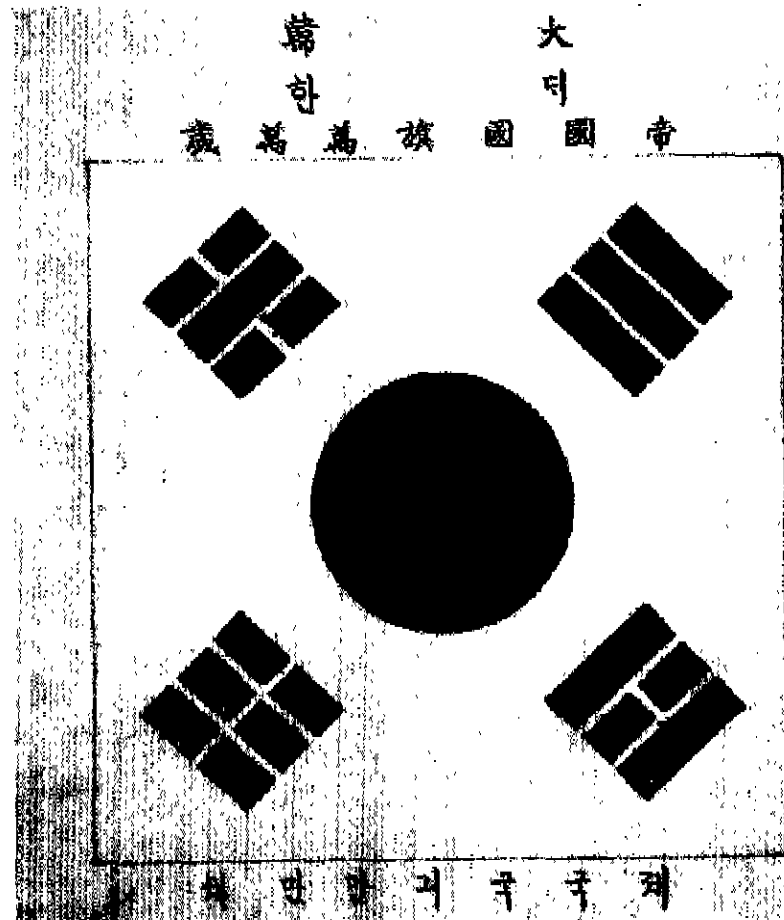


그림 자료 11. 藏書閣 소장의 『各國旗圖』에 실린 「大韓帝國國旗萬萬歲」圖